

2022

보행업무편람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차 례

제 1 장 보행안전법 업무개관	1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요	3
2. 지자체 주요 업무 추진 절차	5
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7
제 2 장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9
1.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11
2.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13
제 3 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15
1. 실태조사 개요	17
2. 실태조사 방법	19
제 4 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41
1.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43
2.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45

제 5 장 연차별 실행계획 ————— 57

- 1. 국가실행계획 59
- 2. 지역실행계획 61

제 6 장 보행환경개선지구 ————— 67

-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요 69
- 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73
- 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77
-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94
- 5.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108

제 7 장 보행자전용길 ————— 111

- 1. 보행자전용길의 개요 113
- 2.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117
- 3.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120
- 4.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124

차 례

제 8 장 보행자우선도로	127
1. 보행자우선도로의 개요	129
2.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136
3.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140
4. 보행자우선도로의 관리	146
제 9 장 보행안전지수	149
1. 보행안전지수의 개요	151
2. 보행안전지수 평가지표	153
3. 보행안전지수의 공표 및 활용방안	157
제 10 장 기타 법 시행을 위한 업무	159
1. 보행환경 증진방안	161
2.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166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70
4.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173
5. 벌칙 및 과태료	176

제1장

보행안전법 업무개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요
 - 지자체 주요 업무 추진 절차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

제1장 보행안전법 업무개관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요

가. 제정 목적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행안전법 제정을 통해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의 근거,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

나. 제개정 경위

일자	구분	내 용
2012.02.22. 제정	법률 제11339호 2012.08.23.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최초 제정·공포
2015.07.20. 일부개정	법률 제 13433호 2016.1.21. 시행	보행자길의 정의 확대, 보행자전용길 조성범위 확대, 범죄위험지대의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 의무화, 벌금 조항 신설
2020.12.22. 일부개정	법률 제 17694호 2021.6.22. 시행	국가기본계획,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지수,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보행정책 추진체계 정비
2022.01.11. 일부개정(현행)	법률 제 18743호 2022.7.12. 시행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 신설, 지정,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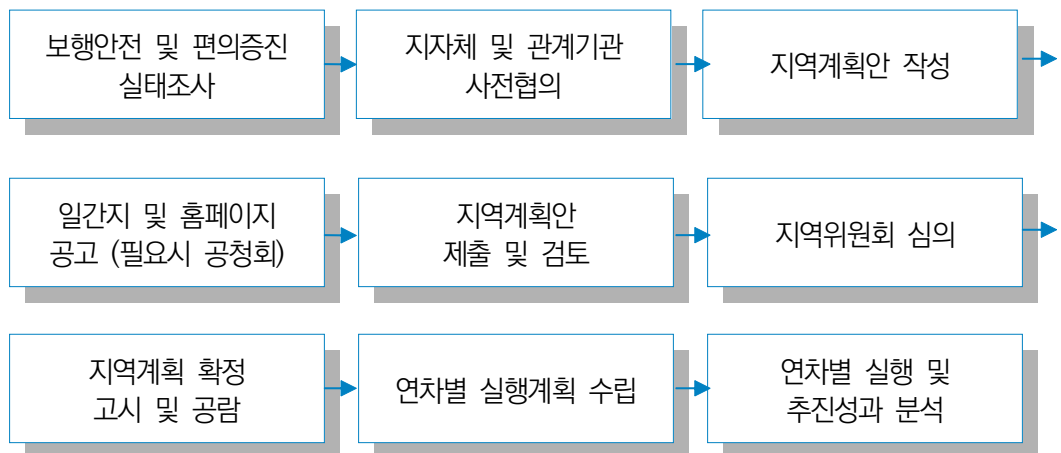
다. 구성 및 내용

구분	조문명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행권의 보장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국가 및 지역 보행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2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의2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의3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보행환경개선평지 지정과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	보행환경개선평지 지정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2조	보행환경개선평지의 관리
	제13조	보행환경개선평지 지정의 해제
	제14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제16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제17조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제17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제17조의3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제18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보행환경 검토
	제21조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제22조	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제23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연구·개발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	공사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제26조	보행안전 연구·개발 사업 등의 지원
	제26조의2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제26조의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27조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법적 의무 불이행 시 제재 수단	제29조	벌칙
	제30조	과태료

2. 지자체 주요 업무 추진 절차

가. 실태조사 및 지역계획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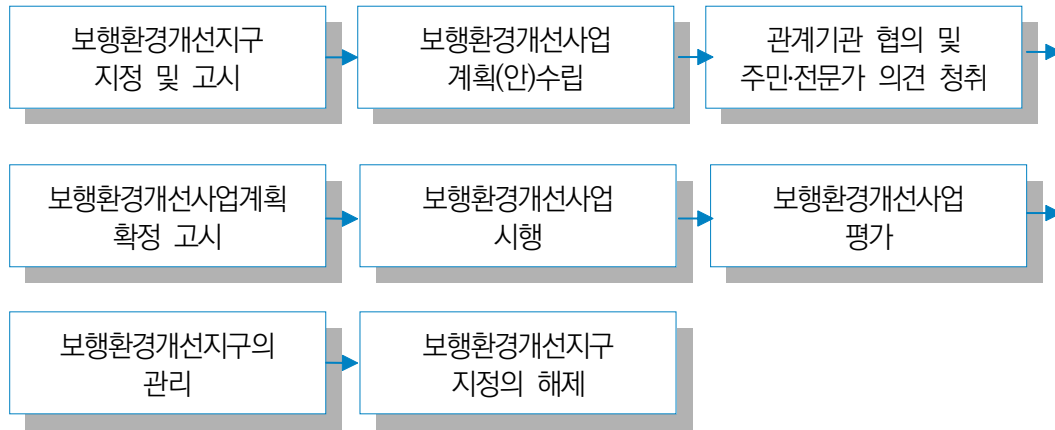
- 목적 : 지역 내 보행안전 및 편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계획 수립
- 수립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
- 업무절차



나. 보행환경개선지구 업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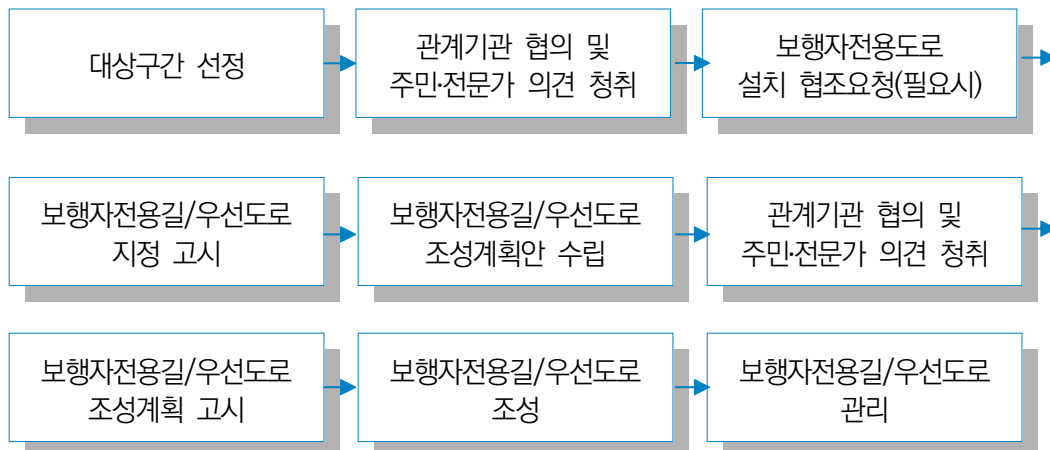
- 목적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지구 내 보행환경 전반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개선
- 대상 : 보행자나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 역사나 전통, 문화적 특색을 가진 구역,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구역, 여러 보호구역 등을 포함하는 구역 등
- 추진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

○ 업무절차



다. 보행자전용길·보행자우선도로 업무절차

- 보행자전용길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거나 생태·문화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하거나 조성
-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는 도로를 지정 및 조성
- 추진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
- 업무절차



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가. 지정 근거

- 법 제26조의3

법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지정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 조직 및 재정 능력을 갖춘 기관

다. 주요 업무

-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시행 및 평가 지원
- 보행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산정 지원
-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행안전지수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과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조사 공표함 (자세한 내용은 본 편람 제9장 참조)

제2장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1.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2.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제2장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1.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가. 근거 조항

- 법 제8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법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중앙위원회의 기능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중앙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 원 장(1인) : 행정안전부장관
 - 부위원장(1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경찰청장

※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위촉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라. 중앙위원회의 운영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조건과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서 제9항까지의 규정을 따름
-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마. 실무위원회의 기능

-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
 - 중앙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그밖에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바.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 원 장(1인) : 행정안전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부위원장(1인) :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중앙위원회와 동일한 조항을 준용

2.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가. 근거 조항

- 법 제8조의3 및 시행령 제7조의4

법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지역위원회의 기능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지방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가능

다.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 원 장(1인) :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
 - 부위원장(1인) :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
- 그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제3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2. 실태조사 방법
-

제3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가. 실태조사 시행 근거

-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법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실태조사 목적

-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보행자길과 보행환경 실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파악

다. 실태조사 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
-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 가능(법 제28조 제2항)

라.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

-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법 제6조 제1항)
-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시행령 제2조 제1항)

마. 실태조사의 내용

-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 제2항)로 정하는 사항
 - 보행자길 현황
 -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태조사 방법

가. 조사방법과 범위

- 실태조사는 조사방법과 범위에 따라 크게 지역 일반현황 조사, 보행환경 현장 실태조사, 이용만족도 조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구분	조사내용	조사방법
지역 일반현황 조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지역계획’ 목표 수립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인구, 면적 등 지역 내 일반현황자료 조사 •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주요 시설 현황, 기존 계획 및 사업 추진 현황 검토	문헌조사 (전수조사)
보행환경 현장실태조사	•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등 보행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내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표본조사)실시	현장조사 (표본조사)
이용만족도 조사	• 지역 내 보행환경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표본조사)

- 조사의 신뢰도와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이용 시 반드시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조사 시점에서 구득 가능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편람에 제시된 항목들은 모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내 해당사항이 없거나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조사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거나 조사 대상, 규모, 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지역 일반현황 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내용) 인구, 면적 등 지역의 일반 현황과 보행안전 현황, 보행자길 등 보행 관련 시설 및 사업 현황, 관련 조사 및 지표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
- (조사방법)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 생산, 집계, 관리하는 각종 통계자료와 지표, 사업, 조사보고서 등 문헌자료를 수집, 활용

분류	실태조사항목	조사대상
일반 현황	• 인구현황, 도시면적, 자동차등록현황, 도로연장 등	지자체 행정통계
보행안전 현황	•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사고다발지점 분포현황 ※ 법정 보행안전지수 연차별 조사결과 참조	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AS)
시설 현황	• 보행자길 중 보도 현황 • 보도가 없는 도로 현황 • 기타 보행시설 현황(횡단보도/육교/지하도/보행교 등) • 보행유발시설 현황(공원/유통/문화/집회/체육시설 등)	공간정보 데이터
사업 현황	•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조성 현황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조성 현황 • 기타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 시행 이력 (보행우선구역, 생활도로구역, 도로다이어트, 대중교통전용지구, 보도정비 사업 등)	사업별 자료
유관 조사 및 지표 현황	• 교통안전지수(도로교통공단/비법정조사) • 교통문화지수-교통안전 및 보행행태 부문(교통안전법) • 지역안전지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교통복지지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관리지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국가교통조사의 가구통행실태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통행목적별, 수단별, 거리별 통행행태	관계기관에서 생산된 자료 참조, 활용

(2) 조사대상

- (대상기간) 계획수립 연도 기준으로 직전 5개년도, 또는 종전 계획기간부터 직전년도까지의 현황과 연차별 변화 추이를 확인하여 계획에 반영
- (대상지역) 조사주체를 중심으로 여러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여, 전국 또는 상위 지자체 평균 대비 해당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내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역 특성을 비교하여 개선 및 취약지점 도출

(3) 항목별 조사내용

□ 일반 현황

○ 인구현황

- 어린이, 노인 등 연령층별 인구추세, 구성비 등을 비교·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방향 도출

※ 예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인구 구성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사항을 중점 검토

연령층별 인구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		%		%		%		%	
광역	계											
	12세이하											
	13-64세											
	65세이상											
기초	계											
	12세이하											
	13-64세											
	65세이상											
읍면동	계											
	12세이하											
	13-64세											
	65세이상											

○ 도시면적

- 행정구역별 전체 면적 및 시가화면적 현황(용도지역별)을 확인하여 인구밀도, 보행자 교통사고밀도, 보행시설물 밀도 등 공간적 분포 특성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동안 연차별 증감내역이 없는 경우 현황만 기입

도시면적 현황

(단위: km², %)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		%		%		%		%	
지역별	행정구역면적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시가화면적합계											
	시가화면적비율											

○ 자동차등록현황

- 인구 및 상위 지자체 평균 대비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와 구성비를 비교·분석

자동차등록현황

(단위: 대,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구분		%	%	%	%	%	증감률
지역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 자동차 등록 현황 기본통계표의 항목에 따라 구분

○ 도로연장

- 차로 수별 도로연장과 구성비를 검토하여 도로유형에 적합한 개선방안 검토

도로연장

(단위: km,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구분		%	%	%	%	%	증감률
광역 기초 읍면동 ...	계						
	1차로						
	2차로						
	3차로이상						

□ 보행안전 현황

○ 전체 및 보행자교통사고 현황

-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전체 교통사고와 보행자교통사고의 발생 현황을 분석
- 전체 사고에서 유형별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의 현황과 증감율을 비교하고, 보행자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와 사고시 상태별 현황을 파악
- 지역별로 인구, 면적(시가화면적),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 대비 사고위험도를 비교하여 보행안전의 현황과 특성, 취약지점을 도출
- 필요시 심각도별, 도로형태별, 시간대별, 가해차종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고다발지점 등 세부 특성 검토

전체 교통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단위: 건, 명, %)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	%	%	%	%	
지역별	전체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						
	사망자수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						
	부상자수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 세부유형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단위: 건, 명, %)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	%	%	%	%	
지역별	전체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횡단중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보도통행중						
		기타						
	사망자수	횡단중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보도통행중						
		기타						
	부상자수	횡단중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보도통행중						
		기타						

□ 시설 현황

○ 보행자길 현황

- 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보행자길에는 보도와 길가장자리구역, 보행자전용도로, 횡단 보도, 지하보도,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그밖에 도로가 아닌 보행공간까지 포함

법 제2조(정의)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보행자길 유형별, 구간별 세부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체계적 관리 권장
단,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등 기존에 구축된 도로망 자료를 활용하여 보행자길 유형별 현황 집계(추출 기준의 정확성, 일관성에 유의)
- 일반 도로 중 보도 설치 현황(가목)을 우선 조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효폭 확보 여부와 노후도(보도정비이력 20년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 권장
-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도가 없는 도로’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하며, 전체 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연장을 제외하고 보도 설치 구간과 미설치 구간의 비율을 산출
- 보행자전용도로(라목)의 경우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통합하여 ‘사업 현황’에서 다룸
- 도로횡단시설(다, 사목)과 공원 등 시설 내 보행자길(마, 바목)의 경우 연장 산출이 어려우므로 시설 단위 현황 파악(개수, 면적 등)
- 기타 보행자길(아목)의 경우 실제 이용 현황에 따른 구분이므로 전수조사가 어렵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구간은 이하 ‘사업현황’에서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제외

보도 현황

(단위: km, %)

구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지역별	설치구간	총연장						
		설치율						
		유효폭미달						
		노후화구간						
	미설치	총연장						
		비율						

횡단시설 현황

(단위: 개, %)

구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지역별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승강편의시설							

공원 등 시설 내 보행자길 현황

(단위: 개소, km², %)

구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지역별	공원 구역	합 계											
		국립공원											
		도립/ 광역시립공원											
		군립/시립/ 구립공원											
		지질공원											
		도시공원											
	향만친수시설												

○ 보행유발시설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2 제2항 제3호)에
서 보도 설치 시 고려하는 보행유발시설로 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을 제시
- 보행유발시설의 세부 유형과 범위,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
되,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대표 시설과 조사기간 내 변동사항 위주로 조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제1항 제11호(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와 별표1)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
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장, 창고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제외)

보행유발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용도	건축연면적기준(㎡)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	-	-	-	-	-
지 역 별	제1종 근생	공동주택-아파트	60,000이상 90,000이상						
		의원/한의원	25,000 37,500						
		기타	12,000 18,000						
	제2종 근생	공연/집회/전시/관람장	15,000 22,500						
		예식장	3,000 4,500						
		동식물원	20,000 30,000						
	문화 집회	종교집회장	15,000 22,500						
		도매시장	13,000 19,500						
		상점	11,000 16,500						
	판매 시설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6,000 9,000						
		운수시설 (터미널/철도/공항/항만)	11,000 16,500						
		의료시설 - 병원	25,000 37,500						
	교육 연구	대학	100,000 150,000						
		교육원/직업훈련소/ 학원/연구소/도서관	37,000 55,500						
	업무 시설	운동시설(근생제외)	10,000 15,000						
		공공업무시설	7,000 10,500						
		일반업무시설	25,000 37,500						
	숙박 시설	숙박시설	40,000 60,000						
		위락시설	11,000 16,500						
		방송통신시설	43,000 64,500						
	관광 휴게	묘지관련시설	12,000 18,000						
		야외음악당/극장	10,000 15,000						
		어린이화관/관망탑/ 휴게소/관광자무대시설	30,000 45,000						
	장례 시설	장례시설	6,000 9,000						

□ 사업 현황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다음의 사업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유형별 지정 및 조성 현황을 연차별 신규 및 누적 건수로 나누어 조사
 - 법 제9조에서 제15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 법 제16조에서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
 - 법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 기타 보행 및 교통안전 관련 사업

보행 관련 사업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지역 별	지 정	보행 안전 법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타법	보행자전용도로												
			보호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행우선구역												
		기타 사업													
	조 성	보행 안전 법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타법	보행자전용도로												
			보호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행우선구역												
		기타 사업													

□ 유관 조사 및 지표 현황

- 관계기관에서 생산된 조사 및 통계지표를 적극 참조, 활용하여 지역의 보행안전 현황을 객관적, 입체적으로 분석
 - 교통안전지수, 교통문화지수, 지역안전지수,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

다. 보행환경 현장실태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내용) 보행환경 개선 또는 관리 점검이 필요한 특정 가로 및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특성과 시설 및 이용 현황을 파악
- (조사목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 목적으로 구분
 - 사전검토 :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및 기타 보행자길 개선사업을 시행할 후보지를 도출하고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
 - 사후관리: 기존에 관련 사업의 대상지로 지정되거나 조성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전후 변화 및 효과를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대상) 현장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세부 조사가 필요한 특정 구간을 선정

분류	선정기준	예시
사전 검토 구간	보행자길 가운데 향후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후보구간 선정	- 보행자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행자길 -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보행자길 및 보호구역 - 보행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보행자길 - 보행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보행자길
사후 관리 구간	기존에 관련 사업의 대상지로 지정되거나 조성이 완료된 구간	- 법정 절차에 의해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또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및 조성된 구간 (특별한 배제 사유 없으면 모두 포함) - 기타 사업 대상지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구간

- 현장실태조사 대상구간 선정을 위한 절차(권장)
 - 관할 자치구와 시, 군, 읍면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후보구간 추천, 자문, 공고,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탄 및 조사 필요 구간에 대한 의견수렴
 - 취합된 후보구간에 대한 내부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사 대상구간을 선정, 표본이 되는 대상구간의 수는 지역의 계획 및 조사 여건에 따라 조정
 - 필요시 여러 후보구간 가운데 현장실태조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우선조사 대상구간과 향후 조사예정구간을 구분하여 연차별 조사계획 수립

(2) 조사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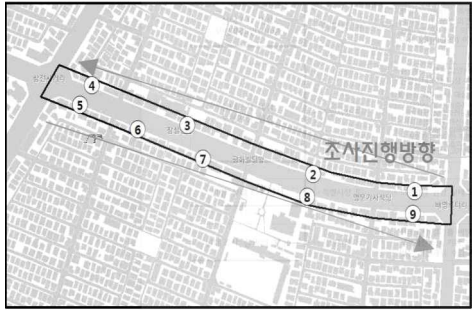
○ (조사내용) 현장실태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도로폭, 보차분리 여부, 보행자서비스수준, 횡단보도 등 보행자길 현황
- 방호울타리, 영상처리기기 등 안전시설 현황
- 유효보도폭, 보도상태, 턱нат춤, 점자블록 등 보행자 편의시설 현황
- 안내표지 등 정보제공 시설 현황
- 적치물, 불법주정차 등 장애물
- 보행자길 관련 계획사항
- 기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필요시 제6장 보행환경개선평가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참조

○ (1단계 : 예비조사) 조사대상 보행자길 특성 파악

- 자료 수집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1,000수치지형도 이용 (단, 1:1,000 수치지형도가 없을 경우에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사전 입력 : 현장조사 항목 중 수치지형도상에서 확인 가능한 모든 항목을 미리 표시하고, 현장에서는 현황 대조 및 차이점 보완 위주로 효율적으로 진행
- 본조사 준비 : 보차분리, 보차혼용 등 보행환경 특성에 따라 조사범위와 주요 구간, 지점, 방향 등을 설정하고 조사용 지도와 조사시트 작성
- 조사시트 : 보행자길 당 1개의 시트로 조사하되, 대상구간이 긴 경우 조사시트를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할 수 있음 (조사시트 양식은 pp.31-33 참조)

구분	보차분리도로	보차혼용도로
조사 방향	(양방향) 양측 보도를 각각 왕복하며 조사	(단방향) 대상구간을 통과하며 조사
조사 순서		

○ (2단계 : 본조사) 조사대상 보행자길에 대한 세부조사

- 현장조사 : 보도폭, 보행교통량 등 현장 실측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실측
- 조사결과 입력 : 조사시트와 지도 상에 조사결과를 표시하고, 엑셀, GIS 등을 활용하여 전산화

(3) 조사결과

- 아래 총괄표 양식을 참조하여 보행자길 현장실태조사 결과 정리
- 조사구간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과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개선사업 또는 정비를 위한 우선순위를 진단하고 지역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에 반영

📊 보행자길 실태조사 총괄표

구분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선 필요성
		종합	구간1	구간2	...		
계							
보행 자길 현황	도로연장거리						
	보차분리현황						
	전체 도로폭						
	보행자 서비스 수준						
	보행사고 건수						
	횡단보도 수						
안전 시설	방호울타리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속도저감시설						
	CCTV, 보안등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						
편의 시설	교통노면표시						
	보도폭						
	보도상태						
	턱낮춤						
장애물	점자블럭						
	정보제공시설(안내표시 등)						
	지장물(헬터 등)						
	적치물						
불법주정차							
기타시설							
기타 개발계획 및 검토사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양식)

1. 조사자 일반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조사자 이름	
------	---------	--------	--

2. 보행자길 실태조사

일반정보		시군구		
		보행자길명		
		보행자길 조사대상구간(시점, 종점)	1 → 17	
보행자길 현황	2-1	보행자길 연장거리	m	
	2-2	보차분리 현황	예 / 아니오	
	2-3	차도를 포함한 전체 도로폭	m	
	보행량	2-4	유효보도폭	m
		2-5	첨두 15분간 보행량	명
		2-6	보행자 서비스 수준	A / B / C / D / E / F
	2-7	보행사고 건수	건 발생, 명 사망, 명 부상	
	2-8	보행자길 내 횡단보도 수	개소	
안전시설	2-9	방호울타리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2-10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2-11	속도저감시설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2-12	영상처리기기(CCTV), 보안등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2-13	횡단보도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2-14	교통안전표지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2-15	교통노면표시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편의시설	2-16	최소 유효보도폭 미만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2-17	보도상태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2-18	턱낮춤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2-19	점자블럭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정보제공시설	2-20	안내표지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장애물	2-21	지장물(첼터, 지하철 환기구) 등	있음 / 없음 / 개선필요 (___개소)	
	2-22	노점상, 입간판 등 적치물	있음 / 없음 / 개선필요 (___개소)	
	2-23	불법 주정차	있음 / 없음 / 개선필요 (___개소)	
2-24	기타시설	적정 / 개선필요 (___개소)		
2-25	기타 보행자길 관련 개발계획 및 검토사항	_____계획		

3. 조사도면

조사도면

작성사례: 교통안전표지 3개소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14-1, 2-14-2, 2-14-3과 같이 조사도면에 해당 개선필요지점의 위치를 표기

작성요령

1. 조사자 일반

- 조사일시 및 조사자 이름 : 실태조사 일시 및 조사자 이름을 기입한다. (예 2013년 1월 1일 18시, 홍길동)

2. 보행자길 실태조사

- 조사대상 시군구, 보행자길 명(보행자길의 도로명주소), 보행자길 조사대상구간(도로명주소 건물번호 1 → 17와 같이 조사진행방향에 따른 보행자길 시점 건물번호 '1'과 종점 건물번호 '17'을 기입), 조사대상 보행자길의 연장거리, 보차분리여부 등을 기입

2-1 보행자길 연장거리를 기입

2-2 보행자길 보차분리여부를 기입

2-3 차도를 포함한 전체 도로폭 기입

2-4 보행자 서비스 수준 측정지점의 유효보도폭을 기입

2-5 보행자 서비스 수준 측정지점의 침투 15분간 보행량을 기입

2-6 보행자서비스 수준 : 아래 보행교통율에 해당하는 LOS값을 기입

- 보행교통율[단위시간(1분)동안 단위길이(1m)를 통과한 보행자수]
= [침투15분 보행량/(15 x 유효보도폭)]
- 보행자서비스 수준(자료 : 도로용량편람, 2013, 국토해양부)

LOS	보행교통율(인/분/m)
A	≤20
B	≤32
C	≤46
D	≤70
E	≤106
F	-

2-7 해당 보행자길의 보행교통사고 건수를 기입

2-8 보행자길의 내 횡단보도 총 개소수를 기입

- 2-9 방호울타리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10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11 속도저감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12 영상처리기기(CCTV), 보안등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13 횡단보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14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15 교통노면표시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16 보도폭이 유효보도폭 미만인 지점에 대해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17 보도상태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18 턱낮춤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19 점자블럭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20 안내표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21 지장물(셸터, 지하철 환기구) 등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22 노점상, 입간판 등 적치물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23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24 기타시설(신호체계 등)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필요지점을 조사
- 2-25 기타 보행자길 관련 개발계획 및 검토사항을 조사하여 기입

3. 조사도면

- 조사도면 : 조사대상 보행자길의 도면에 항목별 개선지점에 대한 위치를 표시(항목별 개선 지점 개소 수와 도면의 해당 항목 개소 수가 일치해야 함)해야 하고, 개선필요지점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을 찍어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함
- 예) 교통안전표지 2개소 개선이 필요하면 2-14-1, 2-14-2의 방법으로 조사도면에 표기

4. 비고

- 조사대상 보행자길 당 1개의 시트로 조사하되 구간거리가 긴 경우 조사시트를 나눠서 조사할 수 있음
- 위 서식에 적어야 하는 항목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전자적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음
- 보차혼용도로의 보도관련 항목은 공학적 판단에 의해 보행자길 전체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에 한하여 조사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신호등 설치 여부, 시인성 등 조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

라. 보행자길 이용 만족도 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이용자 관점에서 지역의 전반적인 보행환경 수준과 보행자길에 대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지역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 (조사대상) 지역별 및 구간별 조사로 구분
 - 지역별: 지역의 전반적인 보행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조사로, 특정 읍·면·동 지역이나 인구집단, 가로 또는 시설 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 표본을 고르게 분배하여 모집
 - 구간별: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앞서 선정한 보행자길 현장실태조사 구간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시기) 일주일 간 보행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선택하고, 비나 눈 등 날씨 변수가 최대한 없는 날을 선정

(2) 조사내용과 방법

- (조사내용) 보행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문별 세부 항목으로 구성
 - pp.35-37. 의 보행자길 이용만족도 조사설문 기본 양식을 활용하되, 지역적 특성이나 사업 유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조사방법) 보행자길 이용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
 - 조사지점 1개소 당 최소 30부 이상
 -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로 평가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 점	5	4	3	2	1

보행자길 이용만족도 설문조사(양식)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길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이 지역 보행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0000년 00월

주관기관:

조사대행:

☞ 조사 및 내용문의:

■ 면접원이 기재하는 문항입니다.

면접원 성명		조사장소	____시군구 ____로
면접일시	20 년 ____ 월 ____ 일 ____ 요일 ____ 시 ____ 분부터 (분동안)		
검증 일시 및 확인	20 년 ____ 월 ____ 일 ____ 요일(____시____분)		검증결과 폐기/통과

■ 각 문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해당되는 문항에 ✓(체크) 또는 적절한 답변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응답자 특성

1-1 성별

- 1) 남자 2) 여자

1-2 연령

- 1) 10~19세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1-3 직업

- 1) 학생 2) 전업주부/무직 3) 전문직/기술직 4) 행정/사무/관리직
5) 판매직 6) 서비스직 7) 농업/어업/수산업 8) 생산/운수/일반노무자
9) 기타

1-4 보행목적

- 1) 출퇴근 2) 등하교 3) 업무 4) 쇼핑
5) 운동/산책 6) 여행 7) 배웅/마중 8) 기타

2. 보행자길 이용 현황

2-1. 현재 이용하시는 보행자길의 평균 이용 횟수

주1회 미만		주1~3회		주3~5회		주5회 이상		매일 이용	
--------	--	-------	--	-------	--	--------	--	-------	--

2-2. 현재 이용하시는 보행자길의 주요 통행시간

새벽 2~6시		오전 6~10시		10시~18시		저녁 18~21시		심야 21~2시	
---------	--	----------	--	---------	--	-----------	--	----------	--

3. 보행자길 만족도

3-1. 현재 이용하시는 보행자길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3-2. 현재 이용하시는 보행자길은 이용하기 안전합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3-3. 현재 이용하시는 보행자길은 이용하기 편리합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3-4. 현재 이용하시는 보행자길은 이용하기 쾌적합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3-5. 현재 이용하시는 보행자길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합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4. 안전성 부문

4-1. **안전시설물(방호울타리, 볼라드 등)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4-2.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 등)이 적절히 설치되어 차량속도가 억제된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4-3. **방범시설(CCTV 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 보도 통행중 범죄 불안이 낮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4-4. 공사기간 동안 보행자를 위한 **안전통로가 충분히 확보되었다.** (해당 시)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5. 편의성 부문

5-1. 여러 사람이 함께 걷기 **충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5-2. 목적지까지의 **횡단보도 간 간격이 적당하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5-3. 썬지공원, 벤치 등 충분한 **휴게시설(공간)**이 확보되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5-4. **보행 안내시설(표지판 등)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5-5. **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이 적절히 설치되어 밤에도 걷기가 수월하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6. 쾌적성 부문

6-1. **소음, 매연 등에 대한 쾌적성이 확보되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6-2. 녹지, 가로수 등 보행경관에 대한 쾌적성이 확보되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6-3. 노점상·전신주 등 보행 장애물에 대한 쾌적성이 확보되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6-4. 도로 내 불법 주정차(보도위 주차 등)로부터 쾌적성이 확보되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7. 교통약자 배려 부문

7-1.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편의시설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7-2. 보도턱 등이 잘 정비되어 **유모차와 휠체어의 보행 편의성이 확보되어 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7-3.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충분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	--	----	--	-----	--	-------	--

(3) 조사결과

-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보행자길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정리
- 세부항목별, 부문별, 조사구간별, 지역별 만족도 점수(5점 척도)를 산술평균, 필요시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활용
 -

보행자길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양식)

■ 조사개요

제출기관	____시, 도____시(군)
담 당 자	____국____과 (성명)_____
연 락 처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현장조사 책임자	기관명 및 소속: _____ 성명: _____ 전화: _____
조사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요일 ~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요일

■ 조사결과 요약

구분	조사지점 (설문부수)	조사일시
○○지역	____시, 도____시(군) ____읍, 면, 동 ____앞 (부)	____년 ____월 ____일
○○지역	____시, 도____시(군) ____읍, 면, 동 ____앞 (부)	____년 ____월 ____일
...		
소계	____개 지점	
○○보행환경 개선지구	____시, 도____시(군) ____읍, 면, 동 ____앞 (부)	____년 ____월 ____일
○○보행환경 개선지구	____시, 도____시(군) ____읍, 면, 동 ____앞 (부)	____년 ____월 ____일
...		
소계	____개 지점	
○○보행자 전용길	____시, 도____시(군) ____읍, 면, 동 ____앞 (부)	____년 ____월 ____일
○○보행자 전용길	____시, 도____시(군) ____읍, 면, 동 ____앞 (부)	____년 ____월 ____일
...		
소계	____개 지점	

■ 조사결과

구 분	조사지점/설문표본수		평균점수	비고
	지점수	표본수		
보행자길 만족도(전체)				
① 안전성				
② 편의성				
③ 쾌적성				
④ 보행안내시설				
안전성 부문				
① 안전시설물				
② 속도저감시설				
③ CCTV 등 방범시설				
④ 공사중 안전통로 확보				
편의성 부문				
① 충분한 보행공간				
② 횡단보도간 간격				
③ 충분한 휴게시설				
④ 적절한 보행안내시설				
⑤ 적절한 조명시설				
쾌적성 부문				
① 소음등에 대한 쾌적성				
② 녹지 등 보행경관				
③ 보행장애물 제거				
④ 도로내 불법주정차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① 점자블럭 등 편의성				
② 보도턱 정비 등 편의성				
③ 교통약자에 맞는 횡단시간				

제4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1.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제4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1.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가. 기본계획 수립 근거

-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의2

법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본계획 수립 목적

- 국가적 차원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

다. 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시기

- (수립주체) 행정안전부 장관 / (수립시기) 5년마다 수립

라. 기본계획 수립 절차

-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7조 제4항)
 - ※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사전협의와 심의 (법 제7조 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한 협의 및 심의 절차 적용. 단,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예외

※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공고 절차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함

마. 기본계획의 내용

○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

- 보행자길, 보행환경 및 보행자 사고 현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 기관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가. 지역계획 수립 근거

○ 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3조

※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계획수립지침이 작성, 통보되기 이전까지는 본 편람의 내용을 따름

법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지역계획 수립 목적

- 지역 차원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방향과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방향 수립
 - 보행자길과 보행환경의 조성, 정비 및 관리에 관한 부문별 세부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 지원
 - 보행교통개선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관련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추진주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의 정합성 강화

다. 지역계획 수립 주체와 시기

○ (수립주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

○ (수립시기) 5년 주기 / 매 지역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

라. 지역계획 수립 절차

□ 지역계획(안) 작성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 본 편람 제3장의 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역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내용을 지역계획에 수록해야 함

○ 지자체 사전 협의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안 수립을 위해 관할구역의 자치구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관계기관 사전 협의

-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함

○ 지역계획(안) 작성

- 실태조사와 지자체/관계기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계획(안) 작성

□ 지역계획(안)의 입안

○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 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고
 - ※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가능
- 지역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전달)
- 특별시장 등은 제출된 의견을 지역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 지역계획안 제출과 보완

- (특별시장 등)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 (시장 또는 군수) → 도지사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사유에 따라 특별시장 등이 제출한 지역계획안의 변경 요청 가능
 - ※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과 통합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해야 함
-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
- 지역계획 확정·고시 :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지역계획의 변경

- (변경사유) 계획 여건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기존에 수립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역계획의 변경 가능
- (변경절차) 지역계획의 변경 시에는 지역계획 수립 절차의 일부 준용
 - 지자체/기관 사전협의 → 정부 제출 및 보완 → 위원회 심의 → 변경 확정 및 고시 (실태조사와 공람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거쳐야 함)
 - 단,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 제9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예외
 - ※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마. 지역계획의 내용

(1) 내용적 범위와 구성

□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의2 제2항)

-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지역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 다음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 제7항)으로 정하는 사항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지역계획과 다른 계획의 관계

-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계획들 중 어느 하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 제6항)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 ※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 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 지역계획의 목차구성(안)

제1장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 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추진 현황
- 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성과 분석

제2장 실태조사 및 문제점 진단

제3장 지역계획 목표 설정

제4장 부문별 실행계획

- 4.1. 보행환경개선지구 부문
- 4.2. 보행자전용길 부문
- 4.3. 보행자우선도로 부문
- 4.4. 보호구역 부문(어린이, 노인, 장애인)
- 4.5. 기타 보행자길 개선 부문
- 4.6. 보행문화 선진화 부문

제5장 연차별 실행계획

제6장 투자 및 자원 조달 계획

※ 위의 목차구성(안)을 참조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2) 지역계획의 방향 및 목표설정

□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 계획을 수립하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 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현황을 조사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
 -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는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 법정 계획과 사업 외에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한 보행 관련 사업 함께 검토
- 보행 관련 주요 계획 내용과 성과, 문제점, 시사점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계획에 반영

□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 본 편람의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지역계획에 수록
- 일반현황 조사, 현장실태조사,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
- 연차별 조사 현황과 결과, 관련 사업계획의 반영 여부, 향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역계획에 수록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 자료의 체계적 축적과 관리, 활용을 도모

□ 지역계획 목표 설정

- 해당 지자체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보행안전과 편의증진 정책의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
 - 기본방향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 편의 수준을 증진하는 것이며,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건강과 삶의 질 개선, 생활권 단위 도시구조와 교통체계 전환,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포용 등 주요 목표 및 정책의제들과의 관련성을 제시
 - 국가기본계획과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기타 보행·교통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지역적 중요도나 연관성이 낮은 항목은 조정
- 지역계획 수립기간 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로 달성할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
 - 조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공표되는 보행안전지수(법 제26조의2)와 5년마다 실시하는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법 제6조)의 조사항목 위주로 구성하되, 필요시 다른 지수에서 조사되는 지표들을 추가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여건 등을 반영하고 사고 및 보행환경 현황,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연차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
 - 연차별 목표 달성 시점은 계획을 수립하는 직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집계 및 공표가 완료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기준시점을 조정하고 그 기준을 명시할 수 있음
 - 보행안전지수와 지역계획 수립의 공간적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역 내 자치구/군별로 나누어 세부 현황에 따른 목표지표 검토

- 이용자 만족도 부문은 5년 주기의 실태조사와 통합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의 목표 설정을 권장 (연차별 목표 설정 시 매년 조사 시행에 필요한 주체, 시기,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연차별 목표 설정(안)

부문		목표지표	현재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보행 안전 지수	사고 안전도 영역	사고안전도 총점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고비용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보행자 사고비용					
			노인 인구 10만명당 노인 보행자 사고비용					
		통행 장소별	횡단중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중					
		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사고비용					
	정책 노력도 영역	정책노력도 총점						
		보행 사업 예산 규모	전체					
			보행환경개선키구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기타 관련 사업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실태 조사	보행자길 현황	보행자길 중 보도 현황(총 연장)						
		보도가 없는 도로 현황 (비율)						
	사업 현황 (개소)	보행환경개선키구 지정						
		보행자전용길/전용도로 지정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보호구역 지정						
	조성 현황 (개소)	보행환경개선키구 조성						
		보행자전용길/전용도로 조성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보호구역 정비						
	이용자 만족도 (점)	보행자길						
		보행환경개선키구						
		보행자전용길/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기타	교통문화지수, 지역안전지수, 교통안전지수, 교통복지지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관리지표 등							

(3) 부문별 계획내용

- 지역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행환경개선평화 등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중심으로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
- 각 사업의 특성과 추진 주체, 절차, 예산 등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별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 사업 간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율 방안 제시

□ 보행환경개선평화 부문

- 보행환경개선평화의 지정 및 조성계획과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편람 제6장의 보행환경개선평화 참조
- 지역계획에서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역 내 보행환경개선평화 현황과 현장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행환경개선평화의 체계적 계획, 실행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관할 지역 내 보행환경개선평화의 지정이 필요한 후보구간을 검토하고 개선사업 시행 여부와 우선순위를 판단
- 평화 지정 및 사업 시행 완료된 구간의 사후 평가결과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화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
- 지역 전체의 보행환경개선평화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평화 추진 현황, 평화별 시행 및 평가 시기, 사후 관리와 유지·보수 계획 등도 함께 계획함
- 현황조사와 계획수립, 사업시행, 평가, 유지관리 등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예산과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의 목표와 산출기준(예: 연간 사업건수 x 건당 예산), 예산 등 확보 방안을 제시

□ 보행자전용길 부문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편람 제7장의 보행자전용길을 참조
- 지역계획에서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역 내 보행자전용길 현황과 현장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행자전용길의 체계적 계획, 실행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보행자전용길의 신규 지정, 조성이 필요한 구간, 기존 구간의 연결이나 확장이 필요한 구간 현황을 검토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
- 기존 지정, 조성된 보행자전용길의 현황을 중심으로 이용만족도, 연계활성화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
-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만든 유사 성격의 길들을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하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보행자우선도로 부문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및 조성,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편람 제8장의 보행자우선도로를 참조
- 지역계획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행자우선도로의 체계적 계획, 실행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생활권 이면도로, 국지도로 및 보차미분리도로 등을 대상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신규 지정, 조성이 필요한 후보구간과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
- 기존 지정, 조성된 지역 내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현장조사,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자우선도로의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제시

□ 보호구역 부문

-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성,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2015)」을 참조
- 지역계획에서 보행안전 부문의 연령별 목표지표 달성과 관련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 시설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고려, 조율 필요
- 관할 지역 내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구역별 사고발생 현황, 시설 환경 개선 소요, 보호구역과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연계 정비 방안 및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타 보행자길 개선 부문

- 사업별 대상구간 외에 지역 내 보행자길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점검, 정비, 관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수단 마련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보행자길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적 보행자길 정비계획을 구체화
- 보행자길 교통사고 및 노상범죄 다발지점, 보행자 민원 다발구간, 교통약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구간, 보도 노후화 및 단절구간, 공공시설물의 통합 정비가 필요한 구간,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구간 등을 중심으로 개선의 방향과 필요성, 대안 검토
- 보행자길 정비계획의 실행 여건, 가용 예산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연차별 실행 대상과 범위, 방법, 규모, 시기 등을 구체화

□ 보행문화 선진화 부문

- 지역 보행문화 선진화를 위한 사업은 크게 교육 부문과 홍보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계획을 수립
 - 교육 부문 : 연령, 성별, 거주지역, 보행자와 운전자, 담당 공무원이나 설계 및 시공 관계자 등 대상 집단에 따라 교육 목적과 내용, 수단, 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세분화된 접근 제시
 - 홍보 부문 : 주로 보행 관련 주요 정책의 도입 및 성과 확산, 각종 사업 및 계획 수립 절차에 따른 주민 설명회와 의견수렴, 기타 보행 활성화를 위한 공개 행사 개최 등 여러 시의적 사안에 유연하게 대응
- 해당 지자체 관할의 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들의 교육 및 홍보계획을 조사한 뒤 효율적 통합 방안을 제시
- 안전한 보행문화 확산 뿐 아니라 지역상권 등 장소활성화, 걷기 운동과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제안

(4) 지역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

□ 연차별 실행계획

- 지역계획 목표달성과 부문별 계획실행을 위해, 연차별로 달성할 단계별 세부목표를 설정
- 지역계획 기간 동안 매년 지역실행계획(제5장 참조)에서 다룰 점검 및 보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연차별·사업별 실행 내역에 따른 투자계획을 세우고, 지역계획에 포함된 각 세부사업의 소요비용을 가능한 정확하게 추정
 - 관련 부서에 산출 근거 자료 요청
 - 기존에 시행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서 소요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
-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재원 확보 및 관리 방안 마련
 - 중앙정부 지원 사업은 지원 기준, 시기, 규모를 파악하여 적극 대응
 -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연차별 자체 예산 조달 방안 마련
 - 각 기관별 사업규모와 분담률을 파악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용
- 최근 5년간 실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액수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연간 조달 가능한 재원의 규모 예측
- 예산 문제로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제시

제5장

연차별 실행계획

1. 국가실행계획
 2. 지역실행계획
-

제5장 연차별 실행계획

1. 국가실행계획

가. 국가실행계획 수립 근거

- 법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법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국가실행계획 수립 목적

-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연차별 추진실적과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여 실행수단의 적합성, 효율성 확보

다. 국가실행계획 수립 주체와 시기

- (수립주체) 행정안전부장관
- (수립시기) 매년 / 1월 31일까지 수립 완료

라. 국가실행계획 수립 절차

□ 국가실행계획(안) 작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국가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기관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국가실행계획(안)을 작성

□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 국가실행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수립 절차를 거쳐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등과 협의
 -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 협의 및 심의를 거친 확정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등에게 통보

□ 국가실행계획의 변경 절차

- 국가실행계획의 변경 시에는 변경(안)에 대해 위와 동일한 협의, 심의 및 통보 절차를 준용하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생략 가능
 - ※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동, 계산착오 등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 등

마. 국가실행계획의 내용

□ 국가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기존 계획 검토,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 유관기관 협조요청 사항으로 구성

□ 국가실행계획의 목차구성(안)

- 제1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검토
 - 제2장 전년도 추진성과 및 실적
 - 2.1. 목표 달성치
 - 2.2. 사업별 추진 실적
 - 2.3. 투자실적
 - 제3장 금년도 추진계획
 - 3.1. 추진방향
 - 3.2. 부문별 추진계획
 - 3.3. 투자계획
 - 제4장 유관기관 협조요청사항

2. 지역실행계획

가. 지역실행계획 수립 근거

- 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법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역실행계획 수립 목적

- 지역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연차별 추진실적과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여 실행수단의 적합성, 효율성 확보

다. 지역실행계획 수립 주체와 시기

- (수립주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
- (수립시기) 매년 / 2월 말일까지

라. 지역실행계획 수립 절차

□ 지역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함
-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실행계획의 변경 가능
- 보행환경 개선 목적의 지자체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실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역실행계획의 경우 협의, 공고 등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으나 지역계획 수립절차를 준용하여 운영 권장

마. 지역실행계획의 내용

(1) 내용적 범위와 구성

□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기존 계획 검토,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 유관기관 협조요청 사항으로 구성
 - 5년 단위의 지역계획 수립시 연차별 목표와 실행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지역실행계획은 당해년도 실행과 직결되는 세부사항 위주로 구성

□ 지역실행계획과 다른 계획의 관계

-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보행·교통 관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 「교통안전법」 제2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 지역실행계획 목차구성(안)

제1장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검토

제2장 보행·교통 관련 실행계획 검토

제3장 전년도 추진성과 및 실적

- 3.1. 목표달성치
- 3.2. 사업추진실적
- 3.2. 투자실적

제4장 금년도 추진계획

- 4.1. 추진방향
- 4.2. 부문별 추진계획
- 4.3. 투자 및 자원조달계획

제5장 유관기관 협조요청사항

※ 위의 목차구성(안)을 참조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부문별 계획내용

□ 관련 계획 검토

- 지역계획에서 설정한 기본방향과 연차별 목표, 실행계획을 검토하여 금년도 지역실행계획에서 달성할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 분야를 구체화
- 보행·교통 관련 실행 계획의 수립 현황, 정책목표의 일관성, 사업계획 차원에서 중복 및 관련성을 검토하여 지역실행계획의 역할과 내용적 범위를 조정

□ 전년도 추진성과 및 실적

- 전년도 추진성과와 실적은 크게 목표별 및 사업별로 나누어 검토
- 목표별 달성여부 : 지역계획에서 설정한 전년도 목표치와 추진 실적을 비교하고, 이를 반영하여 금년도 목표치의 조정안 제시

※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하지 않으므로, 연차별이 아닌 지역계획 수립 시 점검

📍 지역실행계획 목표별 달성 여부 점검표

부문		목표지표		전년도 목표	추진 실적	달성률 (%)	금년도 목표	
							당초	조정
보행 안전 지 수	사고 안전도 영역	사고안전도 총점						
		연령 별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고비용					
			어린이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고비용					
			노인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고비용					
		통행 장소 별	횡단중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중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사고비용							
	정책 노력도 영역	정책노력도 총점						
		보행 사업 예산 규모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실 태 조 사	보행자길 현황	보행자길 중 보도 현황(총 연장)						
		보도가 없는 도로 현황 (비율)						
	사업 현황 (개소)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보행자전용길/전용도로 지정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보호구역 지정						
	조성 현황 (개소)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보행자전용길/전용도로 조성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보호구역 정비						
기 타	교통문화지수, 지역안전지수, 교통안전지수, 교통복지지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관리지표 등							

- 사업별 추진실적 : 부문별 실행계획에 제시된 사업유형 및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계획 대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차년도 실행계획에 반영
 - 사업유형별 추진실적 : 사업 유형별로 총 누적 지정건수와 연간 조성건수, 연간 투입 예산을 중심으로 검토
 - 사업별 추진현황 : 현재 추진 중인 사업별로, 현 단계와 조성계획 상의 단계별 예상 공정을 기준으로 진행 현황과 지연 여부, 사유, 평가결과 등을 점검

☞ 지역실행계획 사업별 추진 실적 점검표 (보행환경개선지구 예시)

부문별	목표지표		전년도 목표	전년도 실적	달성률 (%)	금년도 목표 (당초)	금년도 목표 (조정)
사업유형별 추진실적	보행환경 개선지구	총 지정건수					
		연간 조성건수					
		연간 투입 예산					
	..	...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보행환경 개선지구	A지구 OO사업					
		B지구 OO사업					
		...					
	...	...					

□ 금년도 추진 계획

- 추진방향, 부문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
 - 추진방향 :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의 결과와 지역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필요성을 검토, 필요시 변경된 사항과 사유, 근거 등을 명시
 - 부문별 추진계획 : 금년도 추진 예정인 사업 현안별로, 계획 및 실행 주체, 예산 규모, 단계별 일정, 연내 달성 예상 목표 등 세부사항을 기술
 - 투자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을 부문별, 사업유형별, 부서 및 기관별로 종합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총 소요예산과 연간 편성 및 집행 실적을 통합 점검하고, 부족 예산의 향후 조달 계획을 함께 제시

□ 유관기관 협조요청사항

- 연차별 실행계획에 기재된 사업별 추진절차를 점검하여, 사업 담당 부서 간 또는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기, 내용 등을 검토
- 사업별 설명회나 심의, 자문 절차,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

의회와 같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절차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계획 목표달성과 사업별 추진 과정의 효율성 도모

- 연차별 목표달성과 사업추진실적에 관한 기초자료는 향후 국가실행계획 수립이나 중앙정부 지원을 위해 제출하거나, 보행안전지수의 정책노력도 영역과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음

제6장

보행환경개선지구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요
 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5.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

제6장 보행환경개선지구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요

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근거 조항

- 법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및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제11조까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조항

구분	조문명	
법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2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제13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14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제1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시행령	제8조의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9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시행규칙	제3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조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법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정 및 조성 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

다. 보행환경개선티구의 특성

○ (정의) 보행환경의 종합적, 중점적 개선을 위하여 특별시장 등이 보행안전법의 절차에 따라 지정, 조성하고 평가 및 관리하는 지구

○ (목적) 보행자 관점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을 증진

- 안전성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교통사고, 범죄 발생 등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음
- 편리성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이동 시 각종 보행 장애 요소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걸을 수 있음
- 접근성 : 보행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보행동선의 연결 및 우회, 단절 등으로 인한 체감거리가 가까움
- 편의성 : 보행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각종 편의시설(교통약자시설, 휴게, 안내, 조명 등)이 적절히 제공됨
- 쾌적성 : 보행자가 보행환경의 청결과 가로경관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수준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음

○ (추진전략) 지구 차원에서 보행환경의 종합적, 중점적, 체계적 개선 도모

- 단일 가로가 아닌 지구 전체를 면적으로 개선하되, 지구 내 도로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내용을 세분화, 차별화
- 보행공간 확보, 자동차 통행 억제, 교통약자 배려, 보행 위험 및 방해 요소 제거, 보행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지구특성별 가로환경 및 경관조성 등 다양한 측면 고려
- 종합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여 단편적, 일회적 사업추진의 한계 보
-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적 사후점검·유지관리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후속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라. 보행환경개선지구 추진절차

단계	절차	관련 규정	권장사항
지구 지정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구간 중에서 특별시장 등이 지정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그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지구 지정 기준 참조(p.73~) - 후보지 검토는 실태조사, 지역계획 수립절차와 연계
	지구 고시	공보 고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림	
▼			
사업 계획 및 시행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안) 작성 ↓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보행자길의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 횡단보도, 가로등 및 보안등, 영상정보처리 기기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 그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 지구 내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통합 설치 방안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 - 사업계획안에는 법에 명시된 내용 포함, 사업 범위와 현황, 개선방향과 목표, 예산, 일정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 - 평가계획수립 (법 제11조), 지구 내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법 제1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법 제15조)에 관한 사항 포함 권장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특별시장 등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	- 특별시장 등 →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 필요시 공청회 개최 -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시, 제출자에 검토결과 통보	
	사업 계획 확정·고시 ↓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고시	
	사업계획의 변경 ↓	- 계획변경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가능 - 변경안에 대해 계획수립과 동일한 절차 적용 ※ 관계기관 협의, 의견 청취, 확정·고시 ※ 경미한 변경 시 절차 생략 가능	
	사업 시행 ↓	-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개선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 보조 가능 -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단계	절차	관련 규정	권장사항
사업평가	평가계획 수립 ↓	• 사업시행 이전에 평가계획 수립 - 평가의 기본 방향 - 평가 대상 및 방법 - 평가지표 설정 - 평가결과와 활용 방안 -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 평가관련 사항 포함 •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 (2021) 참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	• 평가위원회 설치 여부,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지명 등은 특별시장등의 재량으로 결정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지명 가능 •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의 위원(민간위원 4명 이상)	•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통합적 운영 권장
	사업평가 ↓	•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 평가 실시 • 평가 시 고려사항 -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 보행의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본 편람의 세부내용 참조)	•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2021) 참조
	평가 결과 보고	•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결과 보고 - 특별시장 등 →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 경유	
사후관리	관리대장 작성·보관 ↓	•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 유지 관리 • 작성, 변경, 정정 시 현지조사를 통해 사유를 확인하고 근거자료 함께 보관 • 소속공무원 중 대장 전담관리자 및 책임자 각각 지정	•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과 통합 운영 권장
	실태 점검 및 관리 ↓	• 사업 시행 이후 매년 지구별 관리실태 점검 • 필요 시 유지·보수 시행	• 실태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은 연차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권장
	(지구 해제)	• 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 또는 상실된 경우 해제 가능 • 공보 고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림	

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가. 지구 지정 절차

□ 후보지 검토 및 선정

- 지역 내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구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지를 도출하고, 개선 필요성과 우선순위 검토

※ 자세한 내용은 본 편람 제3장의 현장실태조사 참조

- 실제 지구 지정 및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 선정

※ 별도의 협의나 심의 절차 거치지 않고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지정 가능하나, '나. 지구 지정 기준'을 참조하여 대상지 적합성 검토 권장

- 후보지 검토와 지구 지정, 지구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과정은 대상지마다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역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권장

- 지역계획(안)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사업계획에 관한 안건을 포함할 경우, 조사, 검토, 협의, 의견수렴, 고시 등을 함께 처리하여 절차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의 설득력, 추진력 확보와 사업간 조율에 용이

□ 지구 지정 고시

-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함

- 고시 내용에는 대상지구의 지정 목적, 명칭, 규모, 정확한 위치와 경계,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구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음(법 제9조 제3항)

-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지구 해제 시에는 공보에 고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야 함(법 제13조)

나. 지구 지정 기준

□ 법정 기준

○ 특별시장등은 다음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가능(법 제9조 제1항)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그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세부 기준 및 예시(참조)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보행량이 150인/일 이상인 구역
 -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보도의 설치 요건에 해당하는 보행량 기준 준용
- 보행유발시설 밀집구역 : 학교, 교회, 공원, 도서관, 시장, 마트, 관공서 등 일 평균 200인 이상의 보행을 유발하는 시설이 둘 이상 근접한 구역
- 도로용량편람의 보행자서비스수준 D, E, F에 해당하는 보도가 위치한 구역
 - ※ 보도폭 대비 과도한 보행량이 집중, 첨두시간 보행교통류율이 46인/분/m을 초과하는 구간

🌀 도로용량편람 보행자서비스수준

LOS 수준	보행 교통류율 (인/분/m)	점유 공간 (㎡/인)	밀도 (인/㎡)	속도 (m/분)	보행상태
A	≤20	≥3.3	≤0.3	≥75	-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로 보행속도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 - 타 보행자의 추월이 자유로움
B	≤32	≥2.0	≤0.5	≥72	- 정상적 보행속도 유지 - 보행공간 통과 가능
C	≤46	≥1.4	≤0.7	≥69	- 각자의 보행속도 유지 - 추월시 약간의 접촉발생 -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보행속도와 방향을 가끔 바꿈
D	≤70	≥0.9	≤1.1	≥62	- 이동시 제한을 받아 보행속도 감소 - 추월시 충돌할 위험이 있음
E	≤106	≥0.38	≤2.6	≥40	- 보행속도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음 - 다른 보행자를 추월, 역행, 통과 어려움
F	-	〈 0.38	〉 2.6	〈 40	- 보행자도로의 허용한계점 도달 상태 - 보행공간의 마비상태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 교통약자 이용시설(학교, 장애인 학교, 노인정, 유치원 등)이 위치한 구역
-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문화재, 건축자산 등 지역에서 중요한 역사적 건물이 존재하는 구역
-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보행 관련 불편 민원신고가 3건/6개월 이상 발생하는 보도가 위치한 구역
 - ※ 보행 관련 불편 민원신고: 주차, 적치물, 노면 불량, 조명, 녹지 및 휴게공간 부족 등
 -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잦은 지점이 위치한 구역
 - ※ 교통사고 잦은 지점: 무단횡단 교통사고 3년간 4건 이상 발생지역, 노인 및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행 교통사고 연간 3건 이상 발생지역
 - 도시 내 보행 및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이 높은 구역
 - 보도설치율이 낮거나, 유효폭 미달 또는 노후화구간 비율이 높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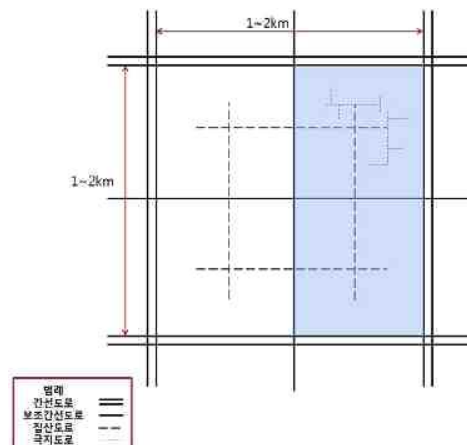
□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다른 구역의 관계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구역을 포함하여 지정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
 - 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의2)
 - 보행우선구역(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
-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시행령 제8조의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구 지정에 반드시 포함
 -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제5호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 및 주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 보행환경개선지구 범위·경계 설정 기준

- 후보지 검토를 통해 실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대상지를 선정할 후,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지구의 범위와 경계를 조정
- 보행가능 거리
 - 보행권에 포함되는 1~4km² 내외의 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1km² 내외 권장, 비도시지역에서는 4km² 까지 확장 가능
 - ※ 정사각형의 한 변을 기준으로 약 1~2km, 도보로 최대 15~30분 거리에 해당
- 동일한 가로망으로 구성된 권역
 - 물리적 단절 없이 동일한 가로망을 공유하는 권역
 - 외곽이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국지도로 위주의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는 구역
- 대중교통 결절점
 - 지구 내 보행교통과 대중교통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결절점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하여 지정

📍 지구 범위 및 경계 설정 기준



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절차

□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함
- 사업계획 수립 절차는 ‘사전조사, 사업계획안 작성, 협의 및 확정’ 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별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은 이하 다.-마.(pp.81-91)의 내용을 참조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법 제11조)에서 사전 평가계획 수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장
 - 지구 특성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목표 및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 계획(안) 수립 전에 사전조사 실시 권장

나. 사업계획 수립 기준

□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법 제10조)

-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시행규칙 제3조)으로 정하는 사항
 -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

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법 제14조)

-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함
-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 특별시장등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시설의 설치(법 제15조)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법 제15조(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1)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음
 - 차량 속도 저감시설
 -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시행규칙 제5조 제1항)으로 정하는 것

※ 보도(歩道)용 방호(防護)울타리, 조명시설,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점자블록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및 횡단보도

- 1)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 2) 교차로나 횡단보도 언덕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 부분 전체를 어두운 붉은색 아스콘으로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 3)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곳에는 배수처리를 고려해야 하며, 겨울철에 눈 등에 의하여 미끄러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4)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히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앞 길 가장자리 구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나. 차도 폭 좁힘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다. 과속방지턱

- 1) 낮은 주행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구간에서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고, 생활공간이나 학교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폭 6미터 미만의 좁은 도로 등 설치장소의 특성에 따라 설치 길이, 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 보행교통섬

- 가. 보행교통섬은 도로의 규모에 따라 직선형태 또는 굴절형태로 횡단보도의 중앙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보행교통섬의 최소폭은 1.5미터로 하여야 한다.
- 다. 보행교통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및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무단횡단 금지시설

- 가.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의 불법유턴 및 역주행 등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높이는 90센티미터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 가. 교통신호기에는 보행자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변경버튼을 설치할 수 있다.

5.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 가.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 시설물, 1.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환승·공항·항만 시설 등),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며, 밤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 라. 보행자 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

6. 보도용 방호울타리

- 가.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자동차가 낮은 속도로 진행하는 구간으로서 운전자에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 나.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차도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의 지정, 도로의 유지·관리 및 배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7. 보행자길 및 도로의 조명시설

- 가.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효율의 향상, 운전자 및 보행자의 불안감 제거 및 피로 감소,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보행자길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조명시설은 적절한 노면(路面) 밝기가 유지되고, 밝기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고, 횡단보도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보행자를 식별하기에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 가. 장애인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은 장애인이 들을 수 있도록 음향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이 설치된 교통신호기는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한다.

9.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 가. 보행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시설과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밖의 안전시설(긴급단추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反射塗料)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점자블록

- 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주의하여야 할 위치나 안내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나. 점자블록의 색상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한다.
- 다. 점형블록은 횡단지점, 대가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려거나,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로 설치한다.
- 라. 선형블록은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가지점, 횡단지점 등에 설치된 점형블록과 연결하여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적 또는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하는 용도로 설치한다.

○ 특별시장등이 위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주체와 사전협의 필요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해당 도로의 관리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요소

○ 사업계획안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요소는 다음과 같음

- 기존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유효한 요소들을 추출한 후, 개선대상 및 문제점에 따라 보행자길과 보행안전, 보행편의, 주차개선 부문으로 종합

※ 음영처리된 부분은 운영요소(규제)이며 나머지는 설계요소(시설)에 해당됨

🌀 보행환경개선사업 세부 계획요소(예시)

구분	계획방향	계획요소
보행자길 조성	보행자길 신설 및 확대	보도 폭 확대
		보도·보행자전용도로(요일제·시간제 포함) 신설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길 정비	보도 등 턱낮추기
		보행자길(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횡단보도 등) 노면 정비
		경사지 정비(계단 설치 등)
보행안전 증진시설·규제	차량속도 저감	지그재그 도로(시케인) 설치
		가각전제 최소화(회전반경 축소, 교차로 내민보도 등)
		회전교차로 설치
		고원식교차로·횡단보도 설치
		차도 폭 좁힘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요철 포장
		과속단속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과속·정지선위반 알림시설 설치
		속도제한(10~30km/h)
	횡단안전	보행교통섬 설치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활주로형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집중조명, 보행자센서 등)

보행편의 증진시설· 규제	보차분리 및 보호	보도용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분리 설치(단차 제공 등)
	범죄예방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보행자길 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설치
	통행안내	교통안내시설(보행자 안내표지판·노면표시 등) 설치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설치
		점자블록 설치
	이동편의	가로시설물 통합 설치 및 위치 조정
		보행 장애물 제거(지중화 등)
		불법 적치물 및 불법 노점상 규제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설치
		보행자 신호주기 조정
주차문제 개선	단속강화	주차단속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주·정차 금지 표지 및 시설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단속요원 배치 등)
	주차공간 확보	노상주차구역 설치
		노외주차구역 설치
		탄력적(요일제·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운영
	휴게공간	보행자 휴게·편의시설(벤치, 파고라, 그늘막 등) 설치
		소공원 또는 보행광장 조성
	경관개선	도로의 보행친화포장 적용
		가로수 식재(녹지) 또는 화분 설치

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 사전조사의 목적

-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대상지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과 보행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행자길 등 주요 시설 현황을 확인하여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중점 개선 방향을 설정한 후, 가로유형별로 적합한 계획 및 설계요소를 적용

□ 사전조사 내용 및 방법

- 크게 지역특성, 교통현황, 시설현황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현장조사를 실시
- 조사항목별로 관련 문헌과 데이터,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도면에 세부 현황을 표시하고, 개수, 비율 등을 종합하여 지표를 산출
- 조사항목은 지자체 여건이나 지구 특성에 따라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하나, 향후 사업별 평가자료의 축적과 활용, 호환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 편람에서 제시하는 아래의 표준 조사항목과 방법을 준수할 것을 권장
 - 음영처리된 부분은 성과분석의 정량적 평가에 포함되므로 필수 조사항목에 해당하며, 나머지 항목은 지역 특성과 개선 대상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요소와 설계안 도출을 위한 현황 분석의 목적으로 조사함

☞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항목

조사내용			지표	조사범위 및 단위
지역 특성 조사	이용자	구역 내 거주자 인구 수	인구 수 (인)	동
	시설입지	보행유발시설 현황	보행유발시설의 수(개)	구역
		교통약자이용시설 현황	교통약자이용시설의 수(개)	구역
		주요 교통시설 현황	주요 교통시설의 수(개)	구역
		문화, 전통, 관광명소 현황	주요 건축물/장소/시설물 수(개)	구역
	계획현황	토지이용현황	주요 용도지역 구성비(%)	동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관련 계획 및 사업 시행 이력 검토	구역

교통 현 황 조 사	통행량	첨두시 보행자 통행량*	(인/시간)	구간	
		첨두시 자동차 교통량*	(대/시간)	구간	
	주행속도	차량의 주행속도*	지점별 85분위 속도(km/h)	구간	
	보행자 교통사고	보행자교통사고 발생건수*	사고건수(건)/3년	구간	
		보행자교통사고 사망건수*	사망건수(건)/3년	구간	
	불법주차	지구 내 불법 노상주차대수*	불법주차대수(대)×전장(m)/도로연장(m)	구간	
	규제현황	교통 관련 규제현황	통행제한, 속도제한, 주차금지, 단속시설 등	구간	
	민원현황	보행환경개선요구정도	신고건수(건)/6개월	구역	
시설 현 황 조 사	보행자길 조성현황	보도 현황*	보도연장/전체도로연장(m)	구간	
		보차미분리도로 현황	보차미분리도로연장/전체도로연장(m)	구간	
		보행자전용길-전용도로 현황*	보행자전용길-전용도로연장/전체도로연장(m)	구간	
		보행자우선도로 현황*	보행자우선도로 연장/전체도로연장(m)	구간	
		유효보도폭 확보 수준*	유효보도폭미달지점 수(개소/100m)	지점	
		보도정비 수준	보도파손지점 수(개소/100m)	지점	
	보행안전 시설	속도저감시설 설치수준	속도저감시설 설치지점 수	지점	
		횡단안전시설 설치수준	횡단안전시설 설치지점 수	지점	
		보차분리 및 보호시설 설치수준	보차분리 및 보호시설 설치지점 수	지점	
		방법 및 보안시설 설치수준	방법 및 보안시설 설치지점 수	지점	
	보 행 편 의 시 설	경로 및 횡단 시설	보행자안내시설 설치수준	보행자안내 및 정보제공시설 수	지점
			횡단보도 설치현황*	지구 내 횡단보도 수	지점
			보행자신호 횡단대기시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평균 신호대기시간(초)	지점
		교통 약자 편의 시설	턱낮춤 및 경사로 확보 수준	개선 필요 지점 수	지점
			휠체어 통행권 확보 수준	휠체어 통행 부적합 지점 수	지점
			유도·점자블록 설치 수준	유도·점자블록 설치구간 연장/전체보도연장	구간
		경관 및 휴게 시설	보행친화포장율	보행친화포장 면적비율(%)	구역
			가로변 녹지 확보율	가로수, 식재대, 화분 수(개/100㎡)	구역
			휴게시설 설치수준	벤치 등 휴게시설 개수(개/100㎡)	구역
			보행자공간 확보 수준	소공원 또는 보행광장 면적(%)	구역

☉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항목별 조사방법

조사내용			비고	조사방법
지 역 특 성 조 사	이용자	구역 내 거주자 인구 수	- 보행환경개선지구가 포함된 동 단위 조사 - 필요시 연령별 구성비 등 인구 특성 검토	지자체 통계, 건축물 대장, 도시계획 등 관련 자료열람 및 요청
	시설 입지	보행자유발시설 현황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참고하여 보행유발시설 개소 수 조사(학교, 교회, 공원, 도서관, 시장, 마트, 관공서 등 일평균 200인 이상 보행을 유발하는 시설) 후 목록 및 위치도 작성	
		교통약자 이용시설 현황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참고하여 목록 및 위치도 작성	
		주요 교통시설 현황	-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기타 교통시설로 분류하여 목록 및 도면 작성	

		문화, 전통, 관광명소 현황	- 지정 및 등록문화재, 건축자산, 노포 등 지역에서 중요한 역사적 건물 및 장소 현황 - 관광 및 상권 활성화 현황, 사업체 현황 등 - 지구내/인접 목록 및 위치도 작성	
		토지이용현황	-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현황 - 지구 내 경계 표시 및 구성 비율 산출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지구 내 교통, 주차 등 관련 계획 및 사업 이력 검토 - 주요 계획내용과 적용 여부 등 확인 - 관련 문헌조사(부서 및 기관 협조 요청)	
교통현황조사	통행량	첨두시 보행자 통행량	- 주중 하루, 주말 하루 씩 총 2일 조사 - 07:00 (오전) ~ 19:00 (오후) 총 12시간 조사 - 진행방향별 5분 단위로 보행량 집계 - 첨두시 보행자 교통량 150인/시 이상 발생 구간 표시	현장관측 또는 영상분석
		첨두시 자동차 교통량	- 주중 하루, 주말 하루씩 총 2일 조사 - 07:00 (오전) ~ 19:00 (오후) 총 12시간 조사 - 진행방향별 15분 단위로 교통량 집계 - 차종별 구분하여 조사 실시(필요시 이륜차 등도 포함) - 첨두시 자동차 교통량 200대/시 이상 발생 구간 표시	
	주행 속도	차량의 주행속도	- 주중 하루, 주말 하루씩 총 2일 조사 - 주중 (08:00 ~ 10:00, 12:00 ~ 14:00, 17:00 ~ 19:00), 주말 (10:00 ~ 12:00, 12:00 ~ 14:00, 17:00 ~ 19:00) 조사 - 지구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구간/지점에서 스피드건을 이용하여 속도 측정, 일반적인 주행행태와 다른 차량(급감속, 정차 등)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 - 각 구간/시간대별 30대 이상 조사(통계적 유의성 확보) - 평균속도, 표준편차, 최대속도, 85분위 속도 산출	
	보행자 교통사고	보행자교통사고 발생건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최근 3년 데이터 조회 -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보행자교통사고 발생건수,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건수, 사상자 수 집계 - 지구 내 사고발생, 사망발생 및 사고다발지점 도면 표시	교통사고 데이터
		보행자교통사고 사망건수		
	불법주차	지구 내 도로변 불법 주차대수	- 노상주차 구획과 주차대수 현황을 적법, 불법으로 구분하여 도면표시 후 구간별 집계 - 주중 하루, 주말 하루씩 총 2일 조사 - 07:00(오전) ~ 19:00(오후)의 기간 중 12:00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를 구분하여 각 1시간씩 조사 (보호구역 내 주차위반 적용시간 고려)	현장조사
	규제 현황	교통관련 규제 현황	- 통행제한, 속도제한, 주차금지, 일방통행 및 회전제한 등 교통 관련 규제 시행 현황과 단속 내역 확인	경찰청 협조
	민원발생	보행환경 개선요구정도	- 6개월 단위 민원신고 접수 내용(노면정비, 주차문제, 가로수 식재 부족, 쓰레기 적치 문제 등) 확인	지자체 민원자료

시설 현 황 조 사	보행자길 조성현황	보도 현황	- 보도설치구간을 양측/편측보도로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 - 전체 도로연장 대비 보도설치구간 연장 비율 산출	현장조사 도면분석 (GIS와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 권장)
		보차미분리도로 현황	- 보차분리시설이 없는 보차혼용구간을 도면에 표시 - 전체 도로연장 대비 보차미분리도로 연장 비율 산출	
		보행자전용길 -전용도로 현황	- 보행자전용길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지정현황 - 대상구간과 시간대 등 세부정보 확인하여 도면에 표시 - 전체 도로연장 대비 보행전용구간 비율 산출	
		보행자우선도로 현황	- 지구 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구간 도면에 표시 - 전체 도로연장 대비 보행우선구간 비율 산출	
		유효보도폭 확보 수준	- 유효보도폭 1.5m/2.0m 미달구간 도면에 표시	
		보도정비 수준	- 파손, 균열, 침수 등 보도정비 불량구간 도면에 표시	
	보행안전 시설	속도저감시설	- 과속방지턱, 차로폭 좁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요철포장, 미니로터리, 도로유색포장 등 교통정온화시설 설치지점/개수 조사	현장 조사
		횡단안전시설	- 횡단보도 안전시설(보행섬, 옐로카펫, 활주로형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집중조명, 보행자센서 등) 설치 현황과 위치 도면에 표시	
		보차분리 및 보호시설	- 연석, 보행자 보호용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설치위치 도면에 표시	
		방법 및 보안시설	- 영상처리기기(CCTV-단속,방법 및 정보수집용), 보안등 설치위치 도면에 표시	
	보 행 편 의 시 설	경로 및 횡단	보행자안내시설 (대중교통, 주요 보행목적지 정보 등)	현장 조사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횡단대기시간	
		교통 약자 편의	턱낮춤/경사로 확보 수준	현장 조사
			휠체어 통행권 확보 수준	
			유도·점자 블록 설치 수준	

		경관 및 휴게 시설	보행친화포장	- 지구 내 전체 보행자길(보차미분리도로 포함) 면적에서 블록, 색채 등 보행친화포장 적용된 면적 비율 산출 ※ 면적 산출이 어려울 경우 구간 연장의 비율로 계산	현장 조사
			녹지공간	- 지구 내 전체 보행자길(보차미분리도로 포함) 면적에서 소공원/가로수/식재대/이동식 화분 등 가로변 녹지가 차 지하는 면적 비율 산출 ※ 면적 산출이 어려울 경우 시설 개수로 계산	
			휴게시설	- 보차분리보도(보행전용/보도블럭 설치) 내 (가로변) 수목 식재 정도, 만남의 장소 등 보행 밀집지점 내 휴게 공간 여부 조사 - 벤치, 화장실, 휴지통, 음수대, 공중전화, 키오스크, 우체 통 등으로 구체적인 시설 종류를 구분하여 조사 후 도면 에 표기하고 100㎡당 시설 수 조사	
			보행자공간	- 전체 지구 면적에서 소공원, 보행자광장 등 통행목적 외 보행자활동이 가능한 공간 면적 비율 산출	

□ 사전조사와 다른 조사의 관계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는 본 편람 제3장의 현장실태조사나 제4장의 지역계획 수립, 또는 지구 지정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비해, 본격적인 개선과 실시설계를 전제로 대상 지구의 가로별, 시설별 특성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파악
- 사전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향후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11조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2021)」에 따라 수립하는 평가계획과 연계하여 사전조사 항목과 방법에 반영
 - 사후평가에서는 이 중 실제 계획에 포함된 요소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량적 평가의 전후 변화 비교, 정성적 평가의 개선 여부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여 계획 이행과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 예정
- 사전조사 단계에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사전 조사의 현실적 어려움과 전후 자료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운전자, 지역 상인 등 이용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전후 변화와 개선 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사후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
 - 다만, 지구 지정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 지구에 대해 실태조사나 후보지 검토 등의 목적으로 본 편람의 제3장의 현장실태조사 및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사전조사에 반영, 참고할 수 있음

라. 사업계획안 작성

□ 사업계획의 목차구성(안)

- 사업계획은 법에 제시된 보행자길과 시설물의 조성, 설치 및 정비방안을 포함 하되, 사업의 범위, 대상지 현황, 사업목표, 평가계획, 예산, 일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제1장 보행환경개선사업 개요

제2장 보행환경개선지구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개선 방향과 목표 설정

제4장 부문별 계획안

보행자길 부문 / 보행안전 부문 / 보행편의 부문 / 주차개선 부문

제5장 구간별 설계안

A구간 / B구간 / C지점 ...

제6장 시설 협의 및 조치사항

제7장 평가계획

제8장 소요예산 및 일정

※ 위의 목차구성(안)을 참조하되, 지구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조정

□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의 통합 개정 방안

- 지구 유형별 계획 및 평가기준의 실효성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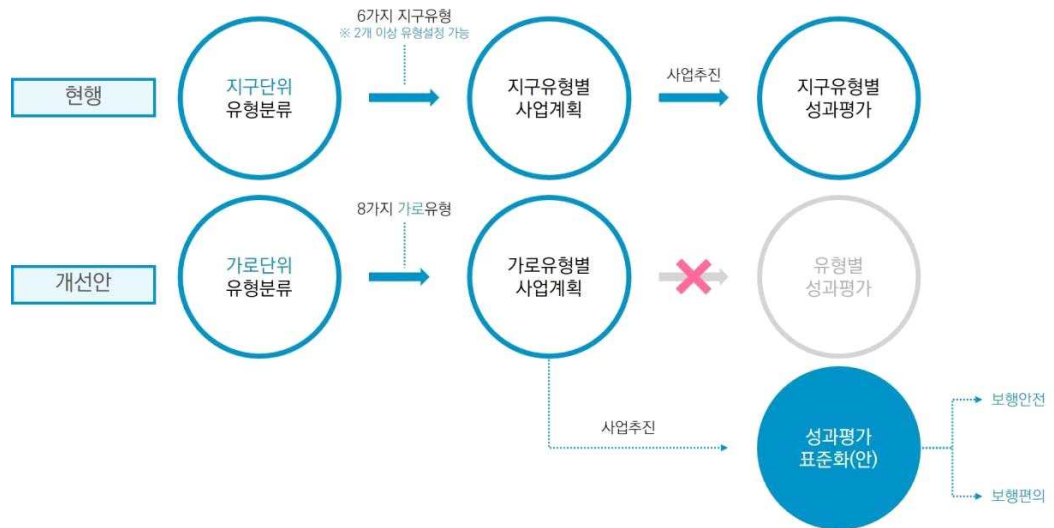
- 「보행업무편람(2013)」에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계획목표와 내용, 평가항목을 다르게 제시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101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면 단위의 대상지를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하고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 현장에서 유형별 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하나의 지구에서도 가로별로 특성과 여건이 다르거나, 여러 유형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 유형 구분을 통합 개편하여 계획 및 사업 운영의 일관성과 유연성 제고

- 계획 및 평가기준은 유형 구분 없이 공통 및 핵심 항목 위주로 통합 적용
-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1) 지구 특성에 따른 중점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2) 가로유형별 설계요소를 세분화하는 이원적 구조로 개편

☞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의 통합 개정 방안



□ 지구 특성을 고려한 중점 개선 방향 설정

- 지구 차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점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
- 중점 개선 방향은 크게 ‘생활안전 중심, 이동편의 중심, 취약지점 보완 중심, 역사문화가로 활성화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아래 내용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구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조정

① 생활안전 중심

- 주민의 일상생활(통학, 통근, 놀이)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주민의 보행안전 및 보행공간 확보,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설 중점 정비

※ 토지이용현황(주거지역),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② 이동편의 중심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많은 보행자들이 일상적으로 반복 이용하는 구역으로, 보행 이동 편의를 중점 개선

※ 토지이용현황(상업지역, 업무지역), 보행밀집지역(보행유발시설 인접지역)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동선 개선과 편의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 대중교통 결절점(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주변 지역

※ 자전거, PM 등 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된 지역

③ 취약지점 보완 중심

- 타지역 대비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등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역으로,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를 주목적으로 함

※ 지방부 마을통과구간, 보행환경 낙후지역, 농어촌 보행자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④ 역사·문화가로 활성화 중심

- 지역 특색 강화를 위하여 미관 · 쾌적성 증진을 주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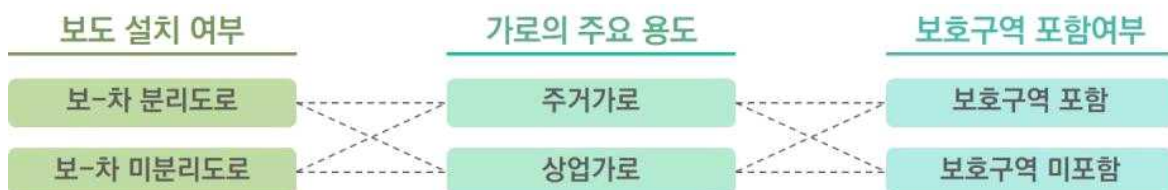
※ 지정 및 등록문화재, 건축자산, 노포 등 특색 있는 장소가 밀집한 지역

※ 관광·휴양·상업 등의 활성화되어 보행 통행이 활발한 지역

□ 가로유형별 계획기준

- 지구 내에서 가로의 폭원, 성격 등에 따라 적합한 설계요소와 기법을 유연하게 선택, 조합할 수 있도록 가로유형별 계획기준을 제시
-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 내 가로 단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개선방향과 계획 및 설계요소를 다르게 적용
- 가로유형은 보도 설치 여부에 따른 도로이용형태(보차분리/보차혼용/보행전용)와 가로의 주요 용도(주거/상업), 보호구역 포함여부에 따라 크게 8가지로 구분
 - 이밖에도 구간별 도로 폭원, 보행자교통사고 현황, 노상주차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가로유형 분류 기준



🌀 가로유형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방안(예시)

보도 설치 여부	개선 방향	세부 계획요소	
		설계요소	운영요소
보차분리	- 보도확보/정비 - 속도규제 - 통행규제	- 보도 신설 및 단절 지점 보완 - 유효보도폭 확보 및 보행공간 확대 - 차로수, 차로폭 축소 - 진입부 도로폭 축소 -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노면표시/요철포장) - 고원식횡단보도 등 횡단시설 정비 - 연석, 볼라드 등 보도 침입 방지시설 - 노면포장, 공공시설물 등 통합정비	- 30km/h 속도제한 - 일방통행 - 대중교통 연계 - 주차관리 - 적치물 정비
보차혼용 (미분리)	- 보행자우선도로 전환, 조성 - 속도규제 - 노면표시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여부 - 보행친화포장(노면갈라포장·블록포장 등) - 진입부 통과교통 억제방안 -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노면표시/요철포장)	- 10~30km/h 속도제한 - 대형차량 등 차종별 진입금지 - 일방통행, 진입제한
보행전용	- 차량통행제한 - 보행공간조성	- 진입부 안내시설 설치 - 볼라드 등 물리적 차단시설 설치 - 보행친화포장(노면갈라포장·블록포장 등) - 보행공간 적극 확보 및 활용 방안	- 시차제 등 탄력적 운영 방안 검토

마. 계획안 협의 및 확정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아래 내용이 포함될 경우, 관련 협의 절차 병행
 - 지구 내 설치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시설에 대한 협의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해당 도로의 관리청,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5조 및 본 편람 pp.78-79 참조.
 - 지구 내 보행자전용길이나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 또는 조성하는 경우
 - 해당 법정 협의 절차 병행
 - ※ 본 편람 제7장, 제8장 참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절차와 대체로 유사하나 공고 요건 등 일부 기준이 완화 또는 생략되어 추가 절차 없이 병행 가능
 - ※ 단, 차마의 통행 제한에 따른 협의 대상이 추가될 수 있으며, 도로 외 공간을 포함하여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하는 경우 법 제18조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 확인 필요
 - 지구 내 「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요청시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 법 제16조 제3항 또는 본 편람 p.115 참조.
 -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의 통합 정비가 필요한 경우
 - 도로 관리청, 공공시설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 ※ 법 제23조 또는 본 편람 제10장(pp.164-169) 참조.
 - 보행자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요청
 - 해당 정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 ※ 법 제14조 또는 본 편람 p.78 참조.
 - 보행자 안전과 피해 예방 조치 권고
 -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등을 배출하는 자
 - ※ 법 제14조 또는 본 편람 p.78 참조.

□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안 공고

- 일반인 열람 가능하도록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 의견 제출 및 반영

-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의견서 제출
- 특별시장등은 제출된 의견을 보행환경개선사업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 (선택 및 권장 사항)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다만,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안건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필요시 특별시장 등 또는 위원장 재량으로 부의하여 검토 및 조정 가능

□ 보행환경개선사업 확정고시

○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고시

- 고시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으나,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들과 일관된 절차와 형식을 준용

○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

-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법 제10조 제6항)

□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의 변경

○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가능

-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

※ 관계기관 협의 → 의견청취 → 확정 · 고시

- 아래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가. 평가 개요

□ 평가 근거

-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법 제 11조 제1항),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법 제11조 제2항)

법 제11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평가)

-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법령과 본 편람에 규정된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2021)」 참조

□ 평가 목적

- 사업 시행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평가
 -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사업계획 요소의 적정 반영 여부 점검
 -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
 - 사업 시행 전후 보행환경 변화와 이용자 행태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
 - 보행자, 운전자, 상인 등 이용자의 인식수준을 정성적으로 측정
-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사업의 성과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방향 모색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 지구에서 사후 보완 및 유지관리에 활용
 - 사업 현장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후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내용과 추진절차의 합리성을 개선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보행안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7명 중 4명 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 관계 공무원,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
 - 평가위원장: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지명
 - 간사: 평가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특별시장 등이 소속 공무원 중 1명 지명
 - 이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평가위원회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법 제8조의3 및 본 편람 제2장)에 비해, 특정 사업의 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구성되며 더 적은 인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됨
- 평가위원회는 사업 담당 부서 및 실무자가 직접 결정하기 어렵거나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사안을 중립적으로 검토, 조언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음 (예시 및 권장사항)
 - 평가계획의 수립 또는 적절성 검토
 - 지역특성에 따른 평가내용, 방법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사후평가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 평가결과 종합 및 보완 의견 제시
 - 평가결과보고서의 채택 및 공개 여부
- 사업별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평가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지역위원회 안전으로 부의하는 방안
 - 지역위원회 안에 사업별 평가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 지역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안별 개별 자문을 의뢰하는 방안
 - 외부 전문 업체에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 법정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에 사업 평가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방안

나. 평가 절차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사전조사, 사후조사, 평가 결과 보고’의 순서로 진행됨

□ 평가계획 수립

-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시행령 제10조 제1항)
 -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 평가계획을 사업계획의 일부로 함께 수립하는 것을 권장함
 - 평가계획 수립 시기와 내용이 사업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단계부터 평가항목과 기준이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고려 필요
- ※ 앞서 제시된 사업계획 목차구성(안)을 참조

□ 사전조사

- 사전조사는 사업계획안 수립 단계의 조사항목과 통합하여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고, 이를 평가항목별로 분석 및 가공하여 활용
 -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전후 비교를 위해 일관된 조사 및 집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객관적, 정량적 조사 항목과, 사후 점검 시 정성적으로 비교, 참조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현황 조사 항목을 나누어 정리
- ※ 사전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앞의 ‘계획안 수립’ 단계를 참조, 사전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 활용하는 방안은 아래 ‘사후조사’ 단계에서 다룸

□ 사후조사

-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이 완료된 이후 사후조사 실시
- 사후조사 데이터는 현장조사와 실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직접 수집하되, 사고 발생 수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동안의 교통사고 현황 데이터가 집계, 발표되기까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사일정 조정
- 수집한 데이터를 전후 비교가 가능한 형식으로 가공하여 개선 효과를 종합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축적, 관리, 공유함으로써 향후 지구 유지관리와 유사한 후속사업 시행 시에 활용

□ 평가 결과 보고

-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

다. 평가 내용 및 방법

□ 평가의 범위와 구성

-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시행령 제10조의 제3항)
 -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 보행의 안전성·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이를 반영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2021)」에서는 평가항목을 크게 ‘사업 시행 내용 점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의 세 부문으로 구성

🔍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의 부문별 평가방법

부문		평가항목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사업 시행 내용 점검		- 보행자길 조성 - 보행안전 증진 시설·규제 - 보행편의 증진 시설·규제 - 주차문제 개선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가	사업 전·후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작성	모든 사업 지구에서 시행
정량적 평가	보행환경 변화	- 사고발생 수준 - 보행네트워크 구축 수준	실무자, 전문가	사업 전·후 현장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전·후 비교 분석	모든 사업 지구에서 시행
	이용자 행태 변화	보행자 - 보행량			
		운전자 - 교통량 - 차량 주행속도 - 불법 주·정차 대수			
정성적 평가	이용자 인식 수준	보행자 - 보행 안전성 - 보행 편리성 - 보행 쾌적성 - 보행환경 만족도	보행자	사업 후 설문조사	모든 사업 지구에서 시행
		운전자 - 주행행태의 보행친화도	운전자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	- 상업시설 매출 증가 효과 - 상업시설 방문객 증가 효과 - 장소성 창출 효과	상인	사업 후 설문조사	사업 지구 내 상업지역이 포함된 경우 시행

○ 사업 시행 내용 점검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계획수립 시 고려된 보행환경 개선 항목이 사업 시행 이후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 정량적 평가

- ‘보행환경’ 과 ‘이용자 행태’ 측면에서 사업 시행 전후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 비교,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
- 보행환경 변화는 사고발생 수준과 보행네트워크 구축 수준을 비교하고, 이용자 행태 변화는 보행량, 교통량, 속도, 불법주정차 대수의 변화를 확인
- 보행환경과 이용자 행태 변화에 관한 정량적 평가는 사전, 사후조사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 구축하여, 시행 전후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

○ 정성적 평가

- 보행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인식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측정
- 사업지구 내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
- 주관적 인식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사전조사 없이 사후조사에서 개선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설문 문항 구성

※ 원칙적으로는 사전, 사후에 각각 수행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대상자 섭외와 전후 표본 불일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 시행 전 대비 개선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

□ 사업시행 내용 점검 부문

○ 평가대상: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시행된 모든 사업

○ 평가주체: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사업 담당 부서 및 담당 실무자가 직접 점검하는 것은 지양, 평가위원회를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자문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것을 권장함

○ 평가내용

- 사업계획에 포함된 계획요소를 ‘보행자길 조성’, ‘보행안전 증진 시설/규제’, ‘보행편의 증진 시설/규제’, 주차문제 개선’ 부문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이행 여부 점검

○ 평가방법

- 사전조사: 계획요소별 개선 전 현황 데이터 수집
- 계획내용 분석 : 사업시행 내용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 사후조사: 현장 실사를 통해 계획요소별 실제 사업시행 현황 점검

○ 평가결과

- 사전 현황 데이터 및 설계도면과 현장 상황을 대조하여 상이한 지점을 도면에 표시하고 사진촬영 및 기록 작성
- 사업계획 내용이 실제 시행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전체적인 비율을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특이사항이나 미시행 사유 등을 기록

☞ 사업시행 내용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예시)

구분	점검 항목	계획 여부 ☒	시행 여부 ☒	시행 항목 수/ 계획 항목 수
보행자길 조성	보행자길 신설 및 확대	보도 폭 확대	☒	2/3
		보도·보행자전용도로(요일제·시간제 포함) 신설	☐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	
		횡단보도 설치	☒	
	보행자길 정비	보도 등 턱낮추기	☒	1/1
		보행자길(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횡단보도 등) 노면 정비	☐	
		경사지 정비(계단 설치 등)	☐	
보행안전 증진시설· 규제	차량속도 저감	지그재그 도로(시케인) 설치	☐	5/6
		가각전제 최소화(회전반경 축소, 교차로 내민보도 등)	☒	
		회전교차로 설치	☐	
		고원식교차로·횡단보도 설치	☒	
		차도 폭 좁힘	☒	
		과속방지턱 설치	☒	
		노면요철 포장	☐	
		과속단속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	
		과속·정지선위반 알림시설 설치	☐	
		속도제한(10~30km/h)	☒	

구분	점검 항목		계획 여부 ☑	시행 여부 ☑	시행 항목 수/ 계획 항목 수
보행편의 증진시설· 규제	횡단안전	보행교통섬 설치	☐	☐	2/2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	☑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활주로형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집중조명, 보행자센서 등)	☑	☑	
	충돌방지	보도용 방호울타리	☐	☐	1/1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	☑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분리 설치(단차 제공 등)	☐	☐	
	범죄예방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	☐	0/0
		보행자길 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설치	☐	☐	
	통행안내	교통안내시설(보행자 안내표지판·노면표시 등) 설치	☐	☐	0/0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설치	☐	☐	
		점자블록 설치	☐	☐	
	이동편의	가로시설물 통합 설치 및 위치 조정	☐	☐	1/2
		보행 장애물 제거(지중화 등)	☑	☐	
		불법 적치물 및 불법 노점상 규제	☐	☐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설치	☐	☐	
보행자 신호주기 조정		☑	☑		
휴게공간	보행자 휴게·편의시설(벤치, 파고라, 그늘막 등) 설치	☑	☑	1/1	
	소공원 또는 보행광장 조성	☐	☐		
경관개선	도로의 보행친화포장 적용	☐	☐	1/1	
	가로수 식재(녹지) 또는 화분 설치	☑	☑		
주차문제 개선	단속강화	주차단속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	☑	2/2
		주·정차 금지 표지 및 시설 설치	☐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단속요원 배치 등)	☑	☑	
	주차공간 확보	노상주차구역 설치	☐	☐	1/1
		노외주차구역 설치	☐	☐	
		탄력적(요일제·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운영	☑	☑	

주1) 음영 부분은 운영요소(규제), 나머지는 설계요소(시설)에 해당

주2) 표에 제시된 항목 외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표에 추가하여 작성

□ 정량적 평가 부문 - 보행환경 변화

○ 평가대상: 모든 사업 지구에서 시행

○ 평가주체: 보행환경개선사업 담당 실무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 사업 담당 부서 및 담당 실무자가 직접 조사할 수 있으나,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 또는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평가내용

- '사고 발생 수준', '보행네트워크 구축 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량적인 지표를 산출하여 사업시행 전후 변화를 비교

🔍 정량적 평가 항목 - 보행환경 변화

구분	평가 항목(지표)		평가 내용	목표효과
보행 환경 변화	사고 발생 수준	통행장소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업 지구 내 횡단중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사업 지구 내 차도통행중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사업 지구 내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사업 지구 내 보도통행중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시간대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업 지구 내 주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사업 지구 내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보행 네트 워크 구축 수준	보차분리도로 설치율	사업 지구 내 총 도로연장 대비 보도·보행자전용도로 연장의 비율	증가
		보행자우선도로 설치율	사업 지구 내 총 보차미분리도로 연장 대비 보행자 우선도로 연장의 비율	증가
		횡단보도 설치율	사업 지구 내 총 보차분리도로 연장 대비 횡단보도의 설치 비율	증가
		유효보도폭 확보율	사업 지구 내 총 보도 연장 대비 유효보도폭(2m 이상) 확보구간 보도 연장의 비율	증가
		평균 횡단대기 시간	사업 지구 내 횡단보도별 보행자 신호주기(초)의 평균	감소

○ 평가방법

- 사고발생 수준: 교통사고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 시행 전·후 '통행장소별(횡단중/차도통행중/길가장자리구역 통행중/보도통행중)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시간대별(주간/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표를 비교

※ 사업 시행 이전 3년간(연평균), 사업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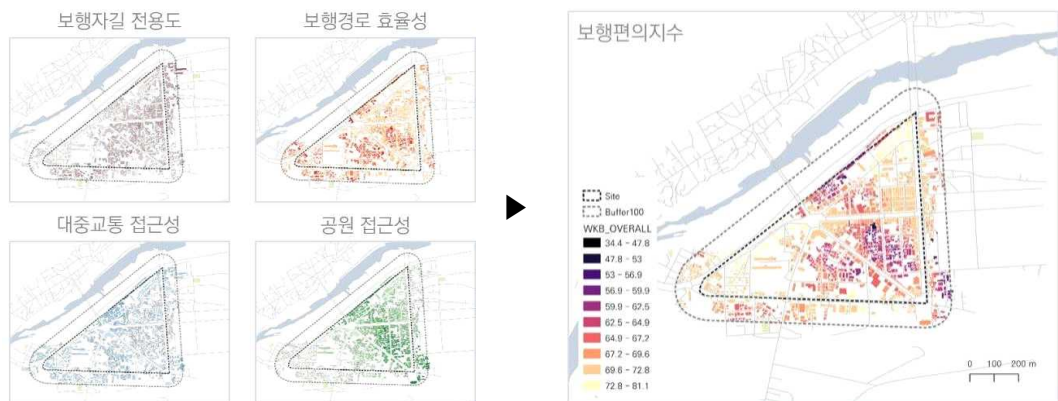
- 보행네트워크 구축 수준: 사업 시행 전·후 현장조사를 통해 보행자길 조성 현황을 파

악한 후, ‘보차분리도로 설치율’, ‘보행자우선도로 설치율’, ‘횡단보도 설치율’, ‘유효 보도폭 확보율’, ‘평균 횡단대기시간’ 지표의 사전·사후 값 비교

○ 지구 내 보행 네트워크의 연결성, 접근성에 따른 보행편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보행편의지수’¹⁾를 참조할 수 있음

- 보행편의지수는 ‘보행자길 전용도, 보행경로 효율성, 대중교통 접근성, 공원 접근성’ 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 2013-2020년 시행된 사업 대상지 중 보행 네트워크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1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 전 대비 보행편의지수가 평균 약 2.9% 증가하였고, 주로 보행자길 전용도와 보행경로 효율성 부문에서 개선이 확인되었음
- 다만, 보행편의지수의 산출 과정이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각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기에 제약이 있으므로, 본 사업평가의 지표는 대상 지구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차 데이터 중심으로 구성
- 평가 과정에서 보행자길 현황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향후 여러 사업을 연계한 종합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보행편의지수를 활용한 보행 네트워크 분석 결과(예시)



경북 영천시(2013년 보행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출처: 행정안전부. (2021).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보행업무편람 개정 연구. p.74.

1)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한수경 오성훈. (2020).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정량적 평가 부문 - 이용자 행태 변화

○ 평가대상: 모든 사업 지구에서 시행

○ 평가주체: 보행환경개선사업 담당 실무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 사업 담당 부서 및 담당 실무자가 직접 조사할 수 있으나,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가 또는 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평가내용: '보행자 행태 변화', '운전자 행태 변화' 관련 정량 지표 평가

○ 평가방법

- 보행자 행태 변화: 사업 시행 전·후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 지구의 도로구간별 '보행량'을 조사하여 사전·사후 값 비교
- 운전자 행태 변화: 사업 시행 전·후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 지구의 도로구간별 '교통량', '차량 주행속도', '불법 주·정차 대수'를 조사하여 사전·사후 값 비교

🔍 정량적 평가 항목 - 이용자 행태 변화

구분	평가 항목(지표)		평가 내용	목표효과
이용자 행태 변화	보행자	보행량	사업 지구 내 도로구간별 보행량(인/분)	증가
	운전자	교통량	사업 지구 내 도로구간별 차량 교통량(대/분)	감소
		차량 주행속도	사업 지구 내 총 도로연장 대비 지점별 85분위 속도가 30km/h 이상인 도로의 비율	감소
		불법 주·정차 대수	사업 지구 내 도로 및 보행공간 불법 주·정차 대수	감소

□ 정성적 평가 부문 - 이용자 인식 수준

- 평가 대상: 모든 사업 지구에서 시행
- 평가 주체: 대상지를 통행하는 보행자(주민, 상인, 방문객 등) 및 운전자
 - ※ 응답자는 사업 시행 전에도 해당 지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 평가 방법
 - 보행자와 운전자 대상 설문지를 각각 작성하여 사후 설문조사 실시
- 평가 내용
 - 사업을 통해 개선된 보행환경에 대한 보행자의 인식 및 만족도를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사업을 통해 변화된 도로 여건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주행행태의 보행친화도 측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정성적 평가 부문 -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

- 평가 대상: 사업지구 내에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시행
- 평가 주체: 사업지구 내 사업 시행 이전부터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
- 평가 방법
 -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후 설문조사 실시
- 평가 내용
 -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사업 시행 이전 대비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에 대한 상인의 인식 수준을 조사
 - 사업 지구별 상업시설 매출액 등 표준화된 자료 획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인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을 '매출 증가', '방문객 증가', '장소성 창출' 측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설문조사의 문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조사양식은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2021)」을 참조

정성적 평가 항목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목표효과
이용자 인식 수준	보행자	보행 안전성	차량 주행속도	안전성 점수 5~7점
			차량-보행자 간 충돌위험	
			교통약자 통행 안전성	
			야간조명 설치 적정성	
			CCTV 설치 적정성	
			횡단시설 설치 적정성	
			횡단시간 충분성	
			보행장애물 수준	
		보행 편리성	보도의 유효 폭 확보 수준	편리성 점수 5~7점
			노면 평탄성	
			시설(목적지)로의 이동편리성	
			대중교통 환승 편리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적정성	
			안내시설 설치 적정성	
			휴게시설 설치 적정성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 수준	
		보행 쾌적성	가로수·녹지 충분성	쾌적성 점수 5~7점
			보행공간 청결도	
			주변 환경과 보행경관의 조화 수준	
		보행환경 만족도	보행환경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점수 5~7점
			보행환경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보행환경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보행환경 만족도	
	운전자	주행행태의 보행친화도	보행친화적 공간 인식 수준	보행친화도 점수 5~7점
			차량 혼잡도	
			차량 주행속도	
			차량-보행자 간 충돌위험	
			보행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불법 주·정차 수준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	상인	매출 증가 효과	상업시설의 매출액 증가 수준	활성화 점수 5~7점
		방문객 증가 효과	상업시설의 방문객 증가 수준	
		장소성 창출 효과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로서의 인지 수준	

주: 각 항목별 평가 내용은 7점 척도로 측정하며, '전혀 아니다(1점)/아니다(2점)/약간 아니다(3점)/보통이다(4점)/약간 그렇다(5점)/그렇다(6점)/매우 그렇다(7점)'로 평가

출처: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2021)」 pp.28~31.

□ 평가 결과의 종합 및 활용

-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 사업 시행 내용 점검에서는 계획 내용 대비 이행 항목의 비율을 검토
 - 정량적 평가에서는 평가항목별로 전후 증감여부, 목표효과 대비 달성여부를 검토
 - 정성적 평가에서는 평가항목별 만족도 점수에서 목표점수(5~7점)를 기준으로 달성 여부를 검토
- 부문별 평가결과 종합(예시)

☞ 사업 시행 내용 점검 결과(예시)

구분	점검 항목	계획 여부 ☑	시행 여부 ☑	시행 항목 수/ 계획 항목 수
보행자길 조성	보도·보행자전용도로(요일제·시간제 포함)·보행자전용길 신설	☑	☑	2/3
	보행자길의 유효폭 확대	☐	☐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	☑	
	횡단보도 설치	☑	☐	
	보행자길 정비	☑	☑	1/1
	노면 정비	☐	☐	
보행안전 증진 시설·규제	차량속도 저감	☐	☐	5/6
	지그재그 도로(시케인) 설치	☐	☐	
	가각전제 최소화(회전반경 축소, 교차로 내민보도 등)	☑	☑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설치	☑	☑	
	차도 폭 좁힘	☑	☐	
	과속방지턱 설치	☑	☑	
	노면요철 포장	☐	☐	
	과속단속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	☑	
	과속·정지선위반 알람시설 설치	☐	☐	
	속도제한(10~30km/h) 시행	☑	☑	

출처: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2021)」 p.35.

○ 평가보고서 작성 시 고려사항

- 평가보고서에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향후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중점 개선 방안 및 계획내용에 비추어 전반적인 개선의 수준과 집중 개선된 부분을 확인
- 계획 대비 이행이 지연, 조정되거나 효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추후 보완 방향을, 계획 내용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공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력 등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한 요인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서술

5.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근거 조항

-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해야 함(법 제12조 제1항)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함(법 제12조 제2항)

□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시행규칙 제4조)

-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지구별로 작성·보관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
 - 소속 공무원 중 개선지구 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
 - 관리대장의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규정
- 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경우
 -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작성·변경·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 관리대장에 반영해야 하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개선지구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함

□ 관리점검의 실효성 강화 방안

- 사후 관리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5년 주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의 '현장실태조사' 및 '이용만족도 조사' 대상 구간으로 기존 사업 완료 지구를 포함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기존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실태 점검, 유지보수의 연차별 추진 계획과 관련 예산을 지역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이행
 - 기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예산규모, 유지관리 실태, 이용자 만족도와 활성화 수준 등을 지역계획의 목표 지표와 보행안전지수의 정책노력도 영역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

📄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서식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제 호		지방자치단체명:		
보행환경개선지구명				
소 재 지				
지정일자		년 월 일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시설물 설치내용				
일련 번호	구간별	연장거리 (미터)	도로폭 (미터)	시설물 설치내용
				- 차량속도 저감시설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무단횡단 방지시설 -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 길 안내시설 - 기타()
작성자 (성명)				인

210mmx297mm
(보존용지 60g/㎡)

제7장

보행자전용길

1. 보행자전용길의 개요
 2.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3.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4.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

제7장 보행자전용길

1. 보행자전용길의 개요

가. 보행자전용길의 근거 조항

○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외

구분	조문명	
법	제16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제17조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제18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9조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시행령	제12조/별표1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2호서식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법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 ① 특별시장등은 생태·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나. 지정 및 조성 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

다. 보행자전용길 관련 법령 검토

□ 보행자전용길의 정의

- 보행자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 중에서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간
 -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거나 생태·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시장등이 지정 및 조성할 수 있음

□ 보행자전용길에서 차마의 통행제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이하 “차마”라 한다)의 운전자는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6조 제5항)
- 보행자전용길에서 차마의 진입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
 -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
 - 특별시장 등이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간을 지정하거나 시간대를 정하여 허용 가능 (법 제16조 제6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필요)

□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전용도로의 관계

- 보행자전용길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에 정의된 ‘보행자전용도로’와 유사한 개념이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 보행자전용길 지정대상은 보행안전법에 규정된 ‘보행자길’의 일부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도로가 아닌 구간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 및 관리권한이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아닌 특별시장등에 있으므로, 교통안전의 측면 외에 지역활성화, 건강증진, 관광, 체험 등 다양한 계획적 목적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역의 보행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차마의 통행제한이라는 교통운영 및 규제 관련 사항 외에, 보행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위한 조성계획 수립 절차(법 제17조)와 구조 및 시설기준(시행령 제12조), 관리 방안(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을 제시

☞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전용도로 비교

구분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전용도로
근거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정의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보행자길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지정 및 설치 권한	특별시장 등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지정목적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지정대상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자길’의 일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일부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적용 규정	차마의 진입 금지 및 제한적 허용 + 물리적 개선을 위한 절차와 기준 제시	차마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적 허용

○ 보행자전용길은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음

- 보행자전용길 지정 시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으나 2015년 보행자길의 정의에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하도록 개정되면서 삭제됨

※ 법률 제13417호(2015.7.20. 일부개정, 2016.1.21. 시행)

-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전용도로 사이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지정

○ 보행자전용길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특별시장등 →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전용길이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보행자전용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

라. 보행자전용길 관련 업무 절차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음
- 특별시장등은 생태·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음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또는 조성계획 수립 시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야 함
-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정 변경 및 해제를 고시하며,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는 수립 절차와 동일하게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함
- 보행자전용길의 실태점검과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자우선도로와 유사하므로, 지역계획과 연계한 통합 관리 권장

2.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가. 보행자전용길 지정 절차

□ 후보지 검토 및 선정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가능(법 제16조 제1항)
- 보행자전용길 조성 의도와 기대효과, 차마 통행 제한의 영향, 주변 환경 및 이용 특성, 계획 및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 구간과 범위 선정
-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 및 검토 절차는 지역계획 수립(제4장)이나 보행자길 현장실태조사(제3장)를 실시할 때,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장

□ 협의 및 지정 절차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특별시장등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 제17조 제6항협의
-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동일한 의견 청취 절차 준용
 - ※ 자치단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의견서 제출 시 검토 결과 통보
-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요청(필요 시)
 - 특별시장등 →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전용길이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보행자전용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
 - 현행 보행안전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없이도 보행자전용길 지정만으로도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인접 도로 및 교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찰과 사전협의 권장

○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 사전협의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함
- ※ 지구 지정 고시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 관련 규정(법적 근거),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명칭(유형), 소재지, 지정 구간, 도로폭, 연장길이, 지정일자 등
- ※ 구간/시간대별로 부분적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명시

○ 보행자전용길 변경 및 해제 고시

-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 변경 및 해제 가능
- 변경 또는 해제 시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함

나. 보행자전용길 지정 기준

□ 보행자전용길 후보지 검토 시 고려사항

- 보행자전용길은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지역 내 보행유발시설과 보행 네트워크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보행안전과 편의증진 및 보행활성화 측면의 기대효과가 큰 구간을 지정
-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자원을 보행을 통해 향유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통합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잠재력이 큰 구간
- 기존 보행 네트워크의 단절지점을 개선하여 연속성과 편의성, 쾌적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구간
- 보행자와 차량의 시공간적 분리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나 보차상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구간

□ 보행자전용길 지정 대상과 유형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대상은 아래 유형을 참조

- ※ 기존 편람에서는 차마 통행 허용 여부와 지역 특성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의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하였으나,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마찬가지로 유형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영
- 역사문화형 : 민족 고유의 전통과 지역의 역사적 자원이 잘 계승, 보존되어 고유의 특색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유형의 길

- 예술문화형 : 고유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살아 숨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의 길
- 생활문화형 :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오솔길, 산책길, 골목길 등 일상생활 속 깊이 자리잡은 친숙하고 아름다운 유형의 길
- 생태문화형 : 숲길, 강변길, 둘레길 등 생태가치와 보존가치가 높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유형의 길
- 상업형 :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 밀집지역이나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 지정, 조성하는 유형의 길
- 대중교통연계형 : 대중교통전용지구, 복합환승센터 등 대중교통의 주요 결절점 주변으로 보행 중심의 연결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유형의 길
- 생활안전형 : 주거지 내 초등학교 통학로를 비롯한 교통약자 이용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유형의 길

□ 차마 통행 제한에 따른 고려사항

- 보행자전용길 지정 시 차마의 진입 제한이 구간 내 목적지 접근성과 우회 및 대체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함
 - 보행량이 교통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구간, 교통 용량이 작아 네트워크에서 해당 노선 제거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은 구간, 대체노선이나 수단을 확보하기 용이한 구간 등은 보행자전용길 지정에 유리한 조건에 해당함
 - 특히 차마 통행제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주민이나 학교, 상가, 대중교통 시설 등 지역 내 민간 기관의 운영 및 이용주체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앞의 유형 분류 예시에서 문화형(역사·예술·생활·생태)에 해당하는 보행자전용길은 대체로 교통량이 많지 않으나 거주자를 위한 최소한의 차량 접근 보장 필요
 - 상업 및 문화형에서 방문객 차량 이용을 제한할 경우 대중교통이나 거점주차시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상업형은 집객 시간대를 피해 필수 조업주차 허용 방안 고려
 - 대중교통연계형과 생활안전형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통근 및 통학시간에 한시적으로 운영 가능, 장애인 콜택시,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수 목적 차량의 허용 여부와 공동 승하차구역 지정 고려
- 보행자전용길 지정 사유가 있으나 차마의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 어려운 구간은 조건부로 통행을 허용하되, 지정 목적과 구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3.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가. 조성계획 수립 절차

□ 보행자전용길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 특별시장등은 생태·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으며(법 제17조 제1항), 이를 위해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함(법 제17조 제2항)
-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 수립 절차는 ‘사전조사, 조성계획안 작성, 협의 및 확정’의 단계로 진행

□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목표 및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성계획(안) 수립 전에 사전조사 실시 권장
 - 환경, 자원, 보행안전, 이용편의, 지역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 구간의 현황과 문제점, 조성 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세부 조사항목과 방법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사전조사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으나, 보행자전용길 조성과 관련성이 높은 다음 사항을 중점 검토
 - 지역의 주요 자원과 이를 연결하는 보행경로 네트워크 현황
 - 기존의 유사시설(산책로, 탐방로 등)과 보행자 이용 현황
 - 보행자전용길 경유 노선 상의 가용 공간 파악(도로여부, 폭, 경사, 경계 등)
 - 토지 소유 현황 등 개발 관련 법·제도적 여건
(도로 외 필지, 보호구역, 개발행위제한 등)

□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안) 작성

- 조성계획은 보행자전용길의 물리적 공간, 시설, 환경을 연속적,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
- 보행자전용길의 시설 관련 기준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별표 1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및 아래 ‘나. 조성계획 수립 기준’ 참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기준(제12조 관련)

1. 보행자전용길의 노선 및 구조

- 가.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하는 경우 보존해야 하는 생태·문화·산림 자원 등이 분포하는 구역은 노선을 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우회하는 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나. 보행자전용길 조성에 따른 주변 지형의 변형으로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보행자전용길의 유효폭

- 1) 보행자전용길의 유효폭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2) 유효폭 확보를 위해 조명, 안내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관리하여야 하며, 보행자전용길의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포장

- 1)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디자인(유색 포장 포함)과 생태계를 배려한 투수성(透水性) 포장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 아닐 경우 배수 구조물의 설치, 배수를 위한 적절한 경사의 확보 등을 통해 물이 고이지 않는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보행자전용길과 다른 도로(「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가 연계되는 구간 등은 포장의 유형과 종류를 다르게 하여 공간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투수성 포장 등을 도입할 수 있다.
- 3) 포장 재료를 선택할 때 주변에 생태 서식지나 주거지가 인접할 경우에는 포장 재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포장은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다. 안내시설

- 1) 해당 보행자전용길의 특성에 맞는 상징이나 색채, 문양 등을 도안하여 모든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에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 2)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 모든 안내시설은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우측보행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 가. 보행자전용길에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 시설물, 1.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환승·공항·항만 시설 등),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보행자전용길 안의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밤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다. 보행자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 라. 보행자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

-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에는 대상지 개요와 현황, 개선 목표와 범위, 설계안, 협의 및 조치사항, 소요예산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보행자전용길 지정 목적과 구간 특성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대상과 범위 설정
 - 개선 범위 설정을 위해 주변 환경 및 자원 현황, 보행 활성화 권역과 연결성, 각종 편의시설 조성 여건,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
 - 보행자길의 연결 및 개선이 필요한 지점, 전략적 특화와 강조가 필요한 지점, 운영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한 지점 등을 구분하여 공간 및 시설 개선방안을 구체화
 - 물리적 환경 정비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항목별 재원을 검토, 조정

□ 계획안 협의 및 확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 특별시장등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동일한 의견 청취 절차 준용
 - ※ 자치단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의견서 제출 시 검토 결과 통보
-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 수립 고시
 - 절차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
- 조성계획 변경 시 변경안에 대해 조성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 적용
 - ※ 관계기관 협의 → 의견 청취 → 고시
-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법 제18조)
 -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 허가·신고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나. 조성계획 수립 기준

□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의 기본방향

- 보행자전용길의 물리적 공간, 시설, 환경을 연속적, 통합적으로 정비
- 보행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 보행 이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보
- 대중교통 접근성과 환승 편의, 자전거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향상
- 훼손 및 단절된 보행공간의 복원, 연결, 재생
- 보행자들의 공간적, 행태적, 사회문화적 수요 반영
- 지역 고유의 장소 자원 특성 반영, 부각 (획일화된 시설물 도입 지양)
- 보행자 중심의 연계와 확산,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향유 기회 확대

□ 조성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보행자 및 휠체에 통행을 위한 최소 유효폭 확보
 - 노면 포장의 기본성능인 평탄성, 내구성, 투수성 확보
- 지역 및 가로 특성을 반영하고 가로경관과 시설물의 조화 및 일관성을 고려
 - 고유한 역사문화적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 색채, 문양 등을 통일감 있게 적용
 - 가로경관과 시설물 통합 설계 : 포장재, 조명, 안내 및 편의시설 등
- 생태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조성 및 운영 방식 채택
 - 신규 조성보다 기존 노선의 정비, 연결, 복원을 우선 고려
 - 신규 지정 시 인접 주거지 및 생태 서식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고려
 - 생태·문화·산림 자원의 보존 또는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회 노선 계획

- 주변 지형의 변형으로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생태적 포장기법 등 탄소저감 방안 고려
- 보행자전용길과 다른 도로의 연계 고려
 - 보행자전용도로(도로교통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보도와 연계하여 보행로의 연속성 확보
 - 일반 도로 및 보차혼용도로 등과 연계되는 구간은 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간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면 재질과 패턴 차별화

4.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 보행자전용길이나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해야 함(법 제19조 제1항)
-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법 제19조 제2항)
 - 관리대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시행규칙 제6조): 대상지별 작성, 전자적 처리, 작성·변경·정정 및 보관 방법, 관리자와 책임자 지정 등
 - 관리대장의 양식: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규정
- 보행자전용길의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은 보행자우선도로 및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내용적으로 유사하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와 절차의 통합 운영 권장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지방자치단체명:	
보행자전용길명							
소재지							
지정일자		년 월 일					
보행자전용길 안의 시설물 설치내용							
일련 번호	구간별	연장거리 (미터)	도로폭 (미터)	보행량 (명/일)	시설물 설치내용		
					○ 표지판 ○ 이정표 ○ 기타()		
작성자 (성명)				인			

210mmx297mm
(보존용지 60g/㎡)

제8장

보행자우선도로

1. 보행자우선도로의 개요
 2.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3.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4. 보행자우선도로의 관리
-

제8장 보행자우선도로

1. 보행자우선도로의 개요

가. 보행자우선도로의 근거 조항

○ 법 제2조 제3호,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9조 외 (2022.1.11. 신설 및 개정)

구분	조문명	
법	제2조 제3호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
	제17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제17조의3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제19조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시행규칙	제5조의2/별표3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시설의 설치 등
	제6조의2/별지 제5호 서식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법 제2조 제3호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지정 및 조성 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

다.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법령 검토

□ 관련 법령 개정 경위

- 보행자우선도로는 2012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개정을 통해 도입
- 2021년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이 확대되었음
 -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령 제825호, 2021.2.24. 일부개정, 2021.2.24. 시행)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 →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
- 2022년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조항 신설
 - 보행안전법 개정안(법률 제18743호, 2022.1.11. 일부개정, 2022.7.12.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안(법률 제18741호, 2022.1.11. 일부개정, 2022.7.12. 시행)

□ 현행 법령 비교

- 현행 법령에서 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사항은 보행안전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시설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현행 법령 비교

구분	보행안전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시설규칙
정의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성격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별시장 등이 지정, 조성, 관리하는 대상	보행자 통행이 차마의 통행에 우선하는 도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로의 일종으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결정, 관리하는 대상
내용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 지정,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마의 통행 방법과 속도제한 등 우선권 보장 근거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와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 보행안전법은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제시하며,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법 제2조 제3호)와 지정(제17조의2), 조성(제17조의3), 관리(제19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를 보행안전법에 일임하고 있으며(제2조 제31의2호)에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마의 통행보다 보행자의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와 수단을 규정

※ 보행자의 통행방법(제8조 제3항), 보행자의 보호(제27조 제6항), 속도제한(제28조의2) 등

- 도시계획시설규칙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시·군계획시설 중 교통기반시설인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 기준(제19조의2)과 구조 및 설치기준(제19조의3)을 제시함

※ 보행자우선도로 유형은 2016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반영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 편람 및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참조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우선권 보장 근거

-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조항(도로교통법 제8조)

- 일반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보도,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제한됨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 보행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

- 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속도제한(도로교통법 제28조의2)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보행자우선도로 시설 관련 기준

○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9조의2)

-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 되도록 할 것

○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9조의3)

-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 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 폭, 차량통행량, 보행자의 통행량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행자의 통행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할 것
- 빗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갖추 것
-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충족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우선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보행안전법 제17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 속도저감시설
-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조명시설, 그 밖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

②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별표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I.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1. 보행자우선도로에서 5m 이상 보행공간 유효폭(전체 도로 폭원에서 기타 시설물, 적치물이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3m로 완화할 수 있다.
2.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 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II.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보행자우선도로의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와 관련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따른다.

2. 속도저감시설

가. 과속방지턱

- 1) 낮은 주행속도가 요구되는 도로구간에서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과속방지턱의 규격, 재료 등과 관련된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제2호에 따른다. 단, 보행자우선도로의 폭원, 긴급자동차의 통행, 인접 시설물과의 단차 등을 고려하여 과속방지턱의 설치 높이나 너비, 폭, 간격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나. 고원식 교차로

- 1) 보행자우선도로와 다른 일반도로가 만나는 진입 또는 교차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 2) 교차로 언덕의 경사부분을 어두운 붉은색 아스콘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는 곳에는 배수처리를 고려해야 하며, 겨울철에 눈 등에 의하여 미끄러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요철포장

- 1) 노면을 작은 요철형태로 포장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노면의 요철포장은 차마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가. 보행자우선도로는 노면 전체에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을 적용할 수 있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이란 도로의 이용자들이 보행활동이 우선되는 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계열의 일반적인 도로 포장과 차별화된 포장재질과 기법, 디자인을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나. 보행자우선도로의 포장은 평탄성, 내구성, 투배수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일반적인 보도의 포장에 준하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이나 교차로, 차량진출입로 등 보행안전이 취약하고 다른 도로와의 구별이 필요한 지점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하기 위해 주변보다 시인성과 차별성 있는 도로 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라.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도로에 할 수 있고, 노면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따른다.

4.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

- 가. 충분한 보행공간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보행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는 노상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식재대, 말뚝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다.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의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 안전시설

- 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안내하기 위해 바닥에 적절한 폭원과 요철을 갖춘 경계면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 나. 보행자가 주의하여야 할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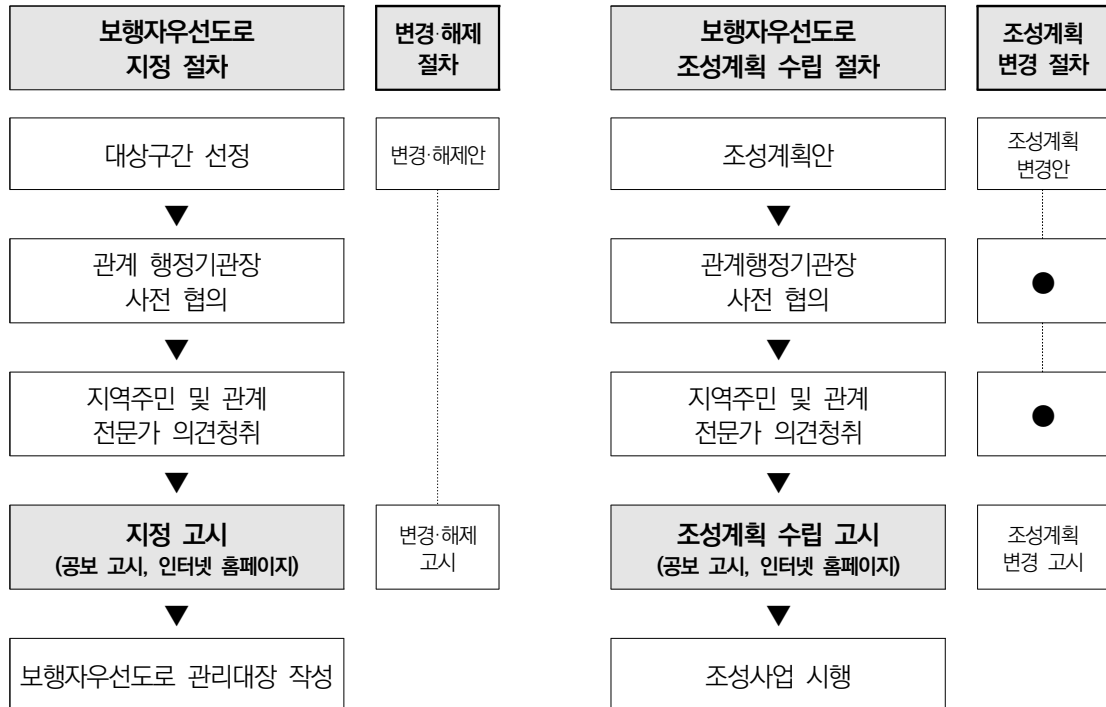
6. 조경 및 휴게시설

- 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가로조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재 등을 설치할 때에는 향후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되는 휴게시설은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 한다.

7. 조명시설

- 가.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조명시설은 적절한 밝기가 유지되고, 밝기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업무 절차



-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또는 조성계획 수립 시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야 함
-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정 변경 및 해제를 고시하며,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는 수립 시와 동일한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함
-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의 관리실태 점검 및 관리대장에 관한 규정은 보행환경 개선지구 및 보행자전용길과 유사하므로, 지역계획과 연계한 통합 관리 권장

2.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절차

□ 후보지 검토 및 선정

-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가능(법 제17조의2 제1항)
- 도시계획시설규칙(제19조의2)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시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사전검토계획의 목적: 지역 내에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후보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와 범위, 우선순위를 결정
 - 사전검토계획은 대상지마다 별도로 수립할 수도 있으나, 지역계획 수립이나 보행자길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장
 - 사전검토계획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예비조사 항목 : 속도, 교통량, 보행량 외에, 도로 폭원과 구조, 보도 설치 여건,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가로변 용도 및 시설,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 계획 및 사업 추진 여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의도와 기대효과를 종합 검토
 - 사전검토계획에서 조사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조성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협의 및 지정 절차

-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동일한 의견 청취 절차 준용
 - ※ 자치단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의견서 제출 시 검토 결과 통보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 사전협의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함

- 지구 지정 고시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 관련 규정(법적 근거),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명칭(유형), 소재지, 지정 구간, 도로폭, 연장길이, 지정일자 등

○ 구간 변경 및 해제 고시

-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 변경 및 해제 가능
- 변경 또는 해제 시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함

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기준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

- 보행자우선도로는 원칙적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하기 어려운 도로 중, 보행자 통행권을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
 - 주로 국지도로, 이면도로 중에서 지구 내 보행 통행이 집중되는 구간에 차량 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위주의 공간을 조성하는 기법이며,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등에는 적합하지 않음
 - 특히 유효 폭원 이상의 양측 보도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로, 보행량에 비해 보도가 좁은 도로의 경우,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들이 전체 공간을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필요에 따라 보도 설치 공간이 충분한 경우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조성 가능
 -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이 종전 폭 10m 미만 도로에서 20m 미만 도로로 확장됨
 - 10m 이상의 보행자우선도로는 공간부족, 보행자 보호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활성화를 위해 전체 도로공간을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일종의 '특화가로형'에 해당
 - 교통량에 비해 보행량이 월등히 많은 지역, 토지이용과 저층부 용도가 활성화된 지역, 지역 내 유동인구와 가로변 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에 적합
 - 폭원과 위계가 비슷한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차분리 형식에 비해, 차량 통행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최소화하는 대신 보행자를 위한 설계요소들을 적극 도입
 - 10m 미만의 보행자우선도로에 비해 공간활용의 잠재력이 크며, 전형적인 설계기법을 따르기보다 지역, 가로 및 장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시도 권장, 필요시 시차제 보행자전용길,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다른 개선기법과 병행할 수 있음

□ 보행자우선도로 후보지 검토 시 고려사항

○ 보행환경 측면

- 보행량이 많은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보행시설의 서비스수준이 열악한 지역, 보행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

○ 가로환경 측면

- 가로의 물리적 형태(폭원, 경사, 단면구조, 구간길이 등)와 주변 시설 및 환경 특성이 보행 중심의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 보도설치 시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가로변 활동의 단절, 제약,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

○ 교통환경 측면

- 전체 교통량 및 통과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 주변 가로망의 서비스 수준이 양호한 지역, 노상 불법주정차 문제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 대중교통환경 측면

-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양호하고 주차장 확보 등 교통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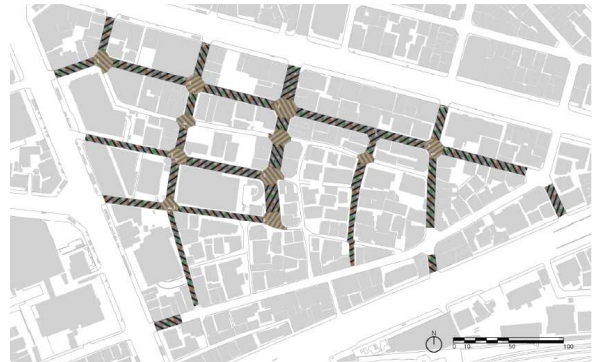
○ 제도 및 계획 측면

-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책 방향과 지역계획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관련 법제 및 계획상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제약이나 활성화 저해 요인이 없는 지역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범위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범위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가로의 직선형 구간 뿐 아니라,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지점과 다른 가로와 교차하는 지점, 가로변 시설의 주요 진출입지점 등을 포함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점, 종점과 경계 조정
- 보행자우선도로는 가로 및 구간별로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시 인접한 여러 구간을 연계하여 연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음
- 보행환경개선지구나 생활도로구역처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구(block) 단위로 지정하여 지구 내 가로망의 통합적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조성사업은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 권장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사례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10길 일원 - 가로망 연계형 정비 사례 (2020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대상지)
출처: 행정안전부. (2020). 보행자우선도로 성과분석 및 활성화 연구. pp.40-41.

3.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가. 조성계획 수립 절차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 특별시장등은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함(법 제17조의3)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수립 절차는 ‘사전조사, 조성계획안 작성, 협의 및 확정’의 단계로 진행

□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수립에 앞서 대상구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전조사 실시
 - 보행자우선도로 사전조사는 단일 가로의 구간별, 지점별 세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며, ‘도로연장, 폭원, 시설물 개수’ 같은 정량적 지표 뿐 아니라, 구체적인 위치, 특성, 문제점 등 세부사항 위주로 조사하여 도면에 기입
 - 특히 대상구간에서 보행자교통사고가 발생 이력이 있는 지점과, 구간의 시점과 종점, 교차로, 차량 진출입구 등 보차상충이 주로 발생하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조사
- 사전조사 내용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사전조사 항목을 참조하되, 보행자우선도로 계획범위와 특성에 따라 재구성한 아래 예시를 참조
 -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지구 내 여러 가로를 포함하는 종합적 개선을 전제로 보행자길과 시설 현황 위주로 조사하므로, 보행자우선도로에 적합한 항목을 추출 및 보완
 -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사후 평가와 연계된 필수 조사항목에 해당함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항목(예시)

조사내용			지표	조사범위 및 단위
지역 특성	계획현황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관련 계획 및 사업 시행 이력 검토	인접지역
	시설입지	활성화 여건	지역인지도, 관광 및 상업, 중심지접근성 등	인접지역
		주요 시설 현황	보행유발시설/교통약자시설/대중교통시설	인접지역
		가로변 용도	주용도, 저층부 활성화 비율	대상구간

교통 현 황	통행량	첨두시 보행자 통행량*		(인/시간)	대상구간
		첨두시 자동차 교통량*		(대/시간)	대상구간
	주행속도	차량의 주행속도*		지점별 85분위 속도(km/h)	대상구간
	보행자 교통사고	보행자교통사고 발생건수*		사고건수(건)/3년	대상구간
		보행자교통사고 사망건수		사망건수(건)/3년	대상구간
	불법주차	지구 내 불법 노상주차대수		불법주차대수(대)x전장(m)/도로연장(m)	대상구간
	규제현황	교통 관련 규제현황		통행제한, 속도제한, 주차금지, 단속시설 등	대상구간
	민원현황	보행환경개선요구정도		신고건수(건)/6개월	대상구간
도로 현 황	도로현황	도로폭/구간길이*		폭원에 따른 가용공간 확인	대상구간
		단면구성과 운영*		차로수/일방-양방/노상주차구획 여부	대상구간
		노면상태		포장재질/노후도/평탄성	대상구간
		보차분리 구간 (해당시)	설치율	보도설치구간연장/전체도로연장(m)	대상구간
			유효폭확보율	양측/유효보도폭 달성구간 비율(%)	대상구간
	시설현황	속도저감시설		단차, 높이, 울타리, 볼라드 등	대상구간
		속도저감시설 설치지점 수			지점
		보행공간 침해시설		시설물, 적치물로 인한 단절지점 수	지점
		녹지/휴게/편의시설		가로수, 식재대, 화분 수(개/100m ²)	지점
	보행자안내시설 설치수준	보행자안내 및 정보제공시설 수			지점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안) 작성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공간과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
-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의 ‘보행자우선도로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과 보행안전법 시행규칙 ‘보행자우선도로 구조 및 시설기준’ 참조
- 보행자우선도로의 설계기준은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참조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는 대상지 개요와 현황, 개선 목표와 범위, 설계안, 시설 협의 및 조치사항, 소요예산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보행자우선도로의 기대효과와 조성원칙, 지역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대상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성계획의 방향과 목표, 추진전략을 설정
 - 물리적 환경 정비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항목별 재원을 검토, 조정

□ 계획안 협의 및 확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 특별시장등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동일한 의견 청취 절차 준용
- ※ 자치단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의견서 제출 시 검토 결과 통보

○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계획 고시

- 절차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

○ 조성계획의 변경 시 변경안에 대해 조성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 적용

- ※ 관계기관 협의 → 의견 청취 → 고시

나. 조성계획 수립 기준

□ 조성계획의 방향과 목표

- 보행자우선도로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일상적 보행환경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국지도로 및 이면도로의 보행환경과 운영방식을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 고려하여 개선하기 위한 수단임
-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행태와 인식에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상지의 가로환경과 이용 특성에 종합적 고려 필요
- 보행자우선도로가 추구하는 개선방향과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생활안전 : 보행자 우선의 가로환경 조성으로 감속, 주의, 배려 등 운전행태의 변화를 유도하여, 보행자교통사고 발생 빈도와 심각도를 저감하고 보행자가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증진
 - 이동편의 : 자동차보다 보행이 훨씬 편리하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보행을 중심으로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 교통수단들을 촘촘히 연결하여, 근린 내 단거리 통행에서 자동차 교통 수요의 억제 및 대체 유도
 - 건강증진 : 가로환경 전반에서 보행 편의를 증진하여 야외 신체활동을 더 자주,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양식 장려
 - 경제활성화 :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상업가로 등에서 과도한 차량 통행이 유발하는 불편함, 불쾌함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연속적인 가로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방문 및 재방문 의사, 매출 증대 등 직간접적 이익 창출 도모

- 사회공동체 :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보행공간 조성, 보행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정서적 구심점 제공, 사회적 신뢰 구축,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
- 이상의 기대효과와 아래 평가기준들을 참조하여 대상지 특성에 따라 조성계획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관련 내용을 설계안에 반영

🔍 보행자우선도로의 목표 : 이용자 인식 조사항목

구분	문항
경제적 효과	도로 내 상업 및 업무시설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사업 이전보다 방문객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지나가기보다 이곳을 목적지로 오는 경우가 잦아졌다.
만족도	대상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안전성 측면의 만족도
	편리성 측면의 만족도
	쾌적성 측면의 만족도
안전성 측면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었다.
	보행자와 자동차의 충돌 위험이 줄어들었다.
	보행자를 추월해가는 차량이 줄어들었다.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데 있어 더 안전해졌다.
	차량이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정도가 늘었다.
	도로 내 어린이들의 놀이활동이 늘었다.
	교차로 등의 차량위험구간에 대한 가시성이 좋아졌다.
편리성 측면	차량통행량이 감소되어 이동이 편리해졌다.
	가로시설물이나 적치물이 제거되어 이동이 편리해졌다.
	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어 이동이 편리해졌다.
	도로의 횡단이 더 쉬워졌다.
	도로 전체를 더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었다.
	도로 내에서 서있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편해졌다.
	교통약자(휠체어, 노인, 어린이 등)가 다니기 더 좋아졌다.
쾌적성 측면	도로 포장의 교체로 가로의 미관이 향상되었다.
	가로시설물이나 적치물이 제거되어 가로의 미관이 향상되었다.
	노상의 쓰레기 불법 투기가 감소하였다.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줄어들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 보행자우선도로 성과분석 및 활성화 연구.

□ 보행자우선도로의 계획원칙

○ 보행친화적인 통합적 가로공간 조성

- 보행자와 차량의 영역이 명시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인 가로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자가 도로 전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자우선도로는 기존의 차량 중심 도로와 다르다는 점을 보행자 및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친화적 환경을 조성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우선도로는 같은 공간을 보행자와 차량이 이용하므로,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
- 조경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 향상

○ 보행안전 취약지점 집중 개선

- 접속도로의 진출입지점, 교차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점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

□ 보행자우선도로의 계획요소

○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요소는 다음과 같음

☞ 보행자우선도로 계획요소

	계획요소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스탬프, 스텐실, 미끄럼방지, 블록포장 등
속도저감시설	과속방지턱, 이미지험프, 고원식교차로, 고원식횡단보도, 지그재그 도로(시게인), 차로폭 축소
안내표지	표지판, 바닥조명, 노면표시, 고보조명, 교차로알리미
안전시설	반사경, 보행자신호등, 방범용CCTV, 차량진입억제시설
편의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주차시설	불법주정차단속CCTV, 노상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면 설치/삭제
도로공간 정비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가로시설물 및 보행장애물 정비, 측구정비, 중앙선 식선
규제 및 운영	속도제한, 일방통행, 주차금지구역, 주변 주차시설 이용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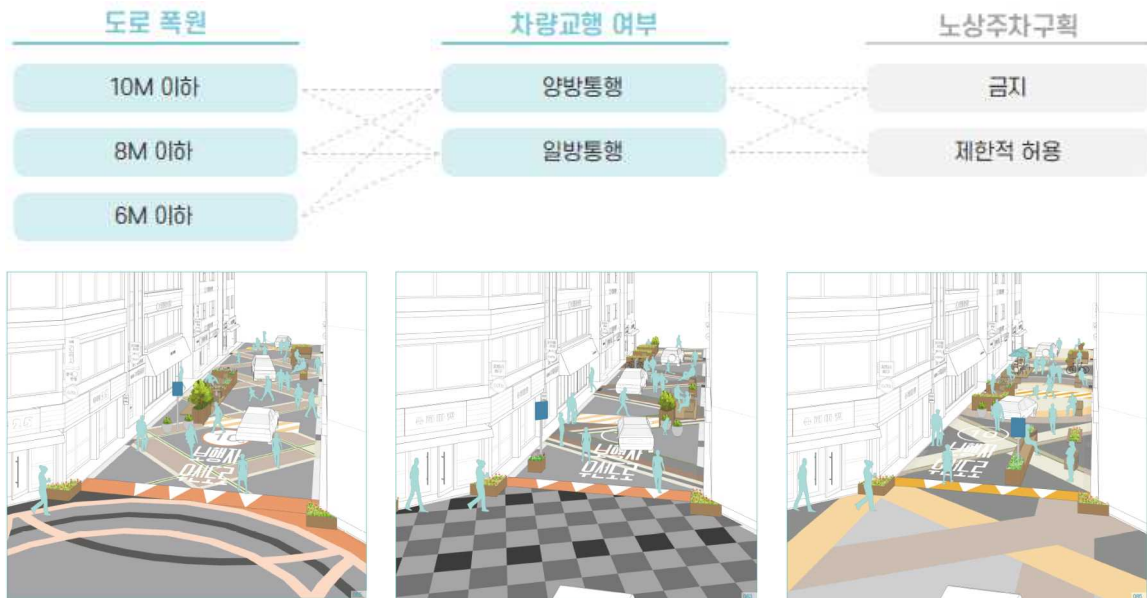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2020). 보행자우선도로 성과분석 및 활성화 연구 - 2020년도 사업 설계요소를 도출하여 정리함

□ 가로유형별 설계기준

- 보행자우선도로의 도로의 폭원, 일방통행 여부, 노상주차 허용여부에 따라 단면구성 및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의 범위가 달라짐

※ 도로유형별 설계안 등 자세한 내용은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을 참조.

☞ 보행자우선도로 가로유형에 따른 설계안(예시)



출처: 행정안전부. (2019).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양방통행10m, 양방통행8m, 일방통행 6m 도로의 설계 프로토타입)

4. 보행자우선도로의 관리

□ 보행자우선도로의 평가

-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달리 사업 평가에 관한 의무규정은 없으나, ‘달성 및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확인하도록 권장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분석 절차와 기준을 참조하되,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특성에 따라 조정이 필요
- 보행자우선도로의 성과평가 기준, 조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2019-2020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보고서 참조

□ 보행자우선도로의 관리

- 보행자전용길이나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해야 함(법 제19조 제1항)
-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법 제19조 제2항)
 - 관리대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시행규칙 제6조의2): 대상지별 작성, 전자적 처리, 작성·변경·정정 및 보관 방법, 관리자와 책임자 지정 등
 - 관리대장의 양식: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규정
- 보행자우선도로의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은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내용적으로 유사하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와 절차의 통합 운영 권장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제 호		지방자치단체명:		
보행자우선도로명				
소재지				
지정일자		년 월 일		
보행자우선도로 안의 시설물 설치내용				
일련 번호	구간별	연장거리 (m)	도로폭 (m)	시설물 설치내용
				☐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 속도저감시설 ☐ 보행친화적 도로 포장 ☐ 기타()
작성자 (성명)		인		

210mmx297mm
(보존용지 60g/m²)

제9장

보행안전지수

1. 보행안전지수의 개요
 2. 보행안전지수의 공표 및 활용방안
-

제9장 보행안전지수

1. 보행안전지수의 개요

가. 보행안전지수의 근거 조항

- 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15조의2

법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보행안전지수의 정의 및 특성

-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내용)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이행 현황 등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하여 지수 산정
- (조사·공표 주체) 행정안전부장관 / (주기) 매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의 현황과 취약지점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행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실효성 제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이행 현황과 효과 점검을 통해 지역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장려하고 우수 정책의 발굴, 지원, 확산을 유도

다. 추진 경위와 계획

- 2020년 12월 보행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지수의 도입 근거 마련
- 보행안전지수의 안정적 도입과 확산, 정착을 위한 연구개발과 지원 필요
 -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지표개발, 조사 및 산정방식 최적화
 - 공표 및 활용방안, 지수 기반의 정책 지원 방안 등 관리 운영계획 구체화
 -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현장의 이해도와 활용도 제고
- 정식 공표 이전에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보완하여 시행 예정
 - 2021년 : 1차년도 지수 개발 및 시범산출 완료
 - 2022년 : 지표 및 산출결과 검증 보완, 개정안과 운영계획(안) 수립
 - 2023년 : 예비지수 공표와 시범운영을 통한 정책효과 모니터링
 - 2024년~ 정식 공표 및 운영 예정

라. 보행안전지수 관련 업무 절차(시행령 제15조의2)

- 보행안전지수는 다음 조사항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하여 산정
 -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이행 현황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도로교통공단(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지자체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 지자체 : 기초현황, 실태조사, 기본계획, 사업계획, 예산 등 정책 자료
- 산정된 보행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과 시범운영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공표 및 운영계획' 수립 예정

2. 보행안전지수의 내용

□ 보행안전지수 산정 대상 및 범위

- 보행안전지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1차년도 시범산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 제외, 조정
 - 지자체 행정구역 위계와 인구 규모에 따라 6개 평가군 구분
 - 읍면동(법정) 단위의 기초 데이터 구축 후 시군구 단위로 합산하여 지수 산출

☞ 보행안전지수 1차년도 시범산출 대상

구분	자치구		자치시		자치군	
행정구역 수	69개		76개		81개	
인구수(평균)	314,862명		329,884명		53,687명	
분류기준	3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3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5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평가군	A-1군(37개)	A-2군(32개)	B-1군(27개)	B-2군(49개)	C-1군(32개)	C-2군(49개)

주1)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주2) 인구 및 자동차등록대수가 현저히 적은 울릉군 제외

주3)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는 B-1군으로 간주함

- 행정구역의 위계와 계획 및 정책 추진 권한,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공간적 단위에서 분석 및 활용 가능하도록 보완 필요
 -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보행안전법 상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권한이 있음
 - 자치구청장과 도지사의 경우 보행안전법 상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권한이 없음
 -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의 경우 자치권한이 없으나, 지역간 보행환경과 안전 수준 차이에 따라 세분화된 정책적 대응 필요
- 검토 및 보완 방향
 - 행정구역 위계에 따른 배제 없이 모든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수 산출 대상을 광역 및 기초 단위로 이원화하는 방안
 - 평가군 내 지역간 비교의 안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보정장치 마련 방안
 - 지역 내 공간적 분포와 편차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방안

□ 보행안전지수의 지표 구성

- 보행안전지수는 보행안전 수준을 진단하는 ‘사고안전도’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수준을 진단하는 ‘정책노력도’의 두 영역으로 구성
- 사고안전도 영역
 - 실제 보행자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하는 ‘결과지표’
 - 보행자 및 보행환경에 따른 사고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세부지표 구성
 - 지역 내 보행안전 취약지점을 파악하여 맞춤형 보행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으로 활용
- 정책노력도 영역
 - 지자체 차원에서 보행안전 정책을 위한 노력의 수준을 측정하는 ‘과정지표’
 - 관련 사업, 예산, 조례, 계획 등 재정적, 제도적, 정책적 현황을 종합 반영
 - 일회적 평가보다 연차별 이행과 자발적, 지속적 노력을 유도하고, 적극적 정책 추진과 창의적 시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표 구성
 - 우수 정책 발굴을 위한 지표 반영, 질적 평가 기준 및 절차 도입

□ 부문별 세부지표 선정 원칙

- (타당성) ‘사고안전도’와 ‘정책노력도’를 대변할 수 있고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선정
- (효용성) 현재 시점에서 구득 가능한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활용, 조사 등 자료 수집과 산출 과정 대비 활용도가 높은 지표 선정
- (명료성) 부문별 세부지표들의 의미와 기여도를 쉽게 분해하여 해석할 수 있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표 구성
- (호환성) 서로 다른 지역이나 공간적 위계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산출 결과의 변환, 합산, 비교에 용이한 지표 선정
- (연속성)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복 수집 가능하며 연차별 증감 및 개선효과를 반영, 추적하기에 적합한 지표 선정

□ 보행안전지수의 지표 구성(안)과 보완 방향

🕒 1차년도 보행안전지수 지표 선정 결과

구분	세부지표	산출식	배점		
사 고 안 전 도	연령별	어린이 보행자 사고비용	$\frac{\text{어린이 보행자사고의 최소인명피해 환산계수}}{\text{어린이(만12세 이하)인구수}}$	100 /9	100 /3
		노인 보행자 사고비용	$\frac{\text{노인 보행자사고의 최소인명피해 환산계수}}{\text{노인(만65세 이상)인구수}}$	100 /9	
		일반인 보행자 사고비용	$\frac{\text{일반 보행자사고의 최소인명피해 환산계수}}{\text{일반인(만13세 - 64세)인구수}}$	100 /9	
	통행 장소별	횡단중 보행자 사고비용	$\frac{\text{횡단중 보행자 사고의 최소인명피해 환산계수}}{\sqrt{\text{인구수} \times \text{일반도로 연장}}}$	100 /9	100 /3
		차도통행중 보행자 사고비용	$\frac{\text{차도통행중 보행자 사고의 최소인명피해 환산계수}}{\sqrt{\text{인구수} \times \text{일반도로 연장}}}$	100 /9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보행자 사고비용	$\frac{\text{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보행자 사고의 최소인명피해 환산계수}}{\sqrt{\text{인구수} \times \text{일반도로 연장}}}$	100 /9	
	보호 구역	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비용	$\frac{\text{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최소인명피해 환산계수}}{\text{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개소}}$	100 /3	100 /3
정 책 노 력 도	예산	보행예산 규모	$\frac{\text{보행사업 예산 총액}}{\sqrt{\text{인구수} \times \text{일반도로 연장}}}$	60	60
	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차 적용 중 (1차 종료 후 2차 수립 완료)	20	20
			1차 수립 완료 후 적용 중	10	
			1차 수립 중 또는 1차 종료 후 2차 미수립	5	
			1차 미수립	0	
	조례	보행환경 관련 조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또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10	20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	5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	

○ 1차년도 연구에서 지표 구성(안) 개발과 시범산출을 완료하였으며, 산출 결과에 대한 검증과 의견수렴을 통해 고도화 예정

- 산출결과의 변별력, 신뢰도, 연속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개발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신규 제안, 발굴된 추가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 검토
- 전문가 심의와 자문에서 나온 보완사항과, 지자체 대상 공론화 및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본 지수 산출에 포함되기 어려운 항목들을 별도의 보조지표로나 추후 확장가능한 예비지표로 제시, 운영 가능성 검토

□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및 산출방식 보완

- 보행안전지수의 산출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세부지표 산출, 표준화 및 점수화, 영역 간 합산, 점수 및 등급 산출 등의 단계별 과정을 거침

🔄 1차년도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 과정



- 개발 및 시범운영 기간 이후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산출, 공표 과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관리 및 운영체계의 최적화 필요
-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산출과정의 적절성, 효율성 제고
 - 유관 기관 및 지자체의 자료 생산, 보고, 제출 등 관련 업무 절차와 연계하여, 지수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협력체계 구축
 - 데이터 선별 기준, 세부지표의 산출식, 보정계수, 표준화방식, 가중치와 합산 방식, 등급화 기준 등 단계별 타당성을 검토, 보완
 - 최종 지수의 공표 형식에서 점수, 등급, 순위 등 다양한 형식에 따른 장·단점 검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보행 안전 진단과 정책 활성화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형식 선정

3. 보행안전지수의 공표 및 활용방안

□ 보행안전지수의 공표 및 운영계획

- 보행안전지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공표 및 운영계획(안)’ 수립
 - 연차별 조사 및 산출과정, 데이터 구축과 관리 체계, 공표 시기와 방법, 지자체 지원 및 활용방안, 중장기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원 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시기, 보행 관련 업무의 연간 추진 일정, 차년도 계획 및 예산 편성 시기, 지역사회의 관심과 호응도를 고려하여 공표 시기와 방법 구체화
 - 연구개발과 시범운영 및 의견수렴 결과 반영, 지자체 보행안전 수준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방안 제시

□ 보행안전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

- (사고안전도 지수 활용) 보행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 진단, 맞춤형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 정책적 지원을 중점 제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도
- (정책노력도 지수 활용) 정책노력도가 우수한 상위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행 정책 추진 경험과 정보 공유, 우수 사례 발굴과 언론 홍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정책 활성화 동기 부여

□ 보행안전지수의 정책적 기대효과

- (중앙정부 차원) 전국 지자체별 보행안전 수준을 주기적,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지자체 대상 평가 및 지원 근거 확보, 우수 사례 발굴, 확산과 공적 투자 확대의 선순환 유도
- (지방정부 차원) 보행안전의 현 수준과 취약지점, 전년대비 개선 정도를 정확히 진단하여, 보행안전 정책 및 사업의 방향 설정,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 (대국민 차원)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을 통해 보행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부 및 지자체 보행정책에 대한 지지와 참여 유도

제10장

기타 법 시행을 위한 업무

1. 보행환경 증진 방안
 2.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4.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5. 벌칙 및 과태료
-

제10장 기타 법 시행을 위한 업무

1. 보행환경 증진방안

가. 관련 근거

법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업무 개요

- (요약) 도시개발, 도로 건설, 관광단지 개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사업별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절차에서 승인관청에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 (목적)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계획안을 최적화함으로써, 보행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후 변경이나 재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
- (주체)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관청
- (시기)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 전 / 사업계획과 동시 제출 가능

다.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음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 공원, 유원지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驛勢圈)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대상사업 유형별 범위와 규모, 제출 시기는 시행령 제14조와 별표2 참고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 그보다 적은 규모의 기준에 해당 시 보행환경증진방안을 제출함

☉ 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대상사업의 범위

구분	기준	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대상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제출대상	제출시기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5만㎡이상(10만㎡미만)	10만㎡이상	실시계획의 인가 전 (동시제출가능)
정비사업	부지면적	3만㎡이상(5만㎡미만)	5만㎡이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인가고시 전 (동시제출가능)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2km이상(5km미만)	5km이상	실시계획의 인가 전 (동시제출가능)
	공원	15만㎡이상(30만㎡미만)	30만㎡이상	
	유원지	8만㎡이상(15만㎡미만)	15만㎡이상	
대지조성사업	부지면적	5만㎡이상(10만㎡미만)	10만㎡이상	사업계획 승인 전 (동시제출가능)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부지면적	5만㎡이상(10만㎡미만)	10만㎡이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 (동시제출가능)
역세권개발사업	사업면적	15만㎡이상(25만㎡미만)	25만㎡이상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동시제출가능)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사업	계획구역면적	5만㎡이상(10만㎡미만)	10만㎡이상	관리계획의 결정 전 (동시제출가능)
관광진흥법	시설계획면적	2.5만㎡이상(5만㎡미만)	5만㎡이상	조성계획의 승인 전 (동시제출가능)
	부지면적	25만㎡이상(50만㎡미만)	50만㎡이상	
온천법	부지면적	5만㎡이상(10만㎡미만)	10만㎡이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 (동시제출가능)

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마련절차

절차	주체	내용
보행환경 증진방안 작성 및 제출	사업자	• (제출시기) 사업계획 승인 전 / 동시제출 가능
검토	승인관청	•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 • 검토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보완 후 제출	사업자	• 검토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승인 관청에 제출
승인	승인관청	• 검토결과에 반영여부 확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사업 시행	사업자	
사후점검	승인관청	• 보행환경증진방안 이행 여부 확인

마.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 보행환경 증진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법 제20조 제2항)

-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주거지역에서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 노인·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 그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시행규칙 제7조)으로 정하는 사항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 보행환경 증진방안 작성시 권장사항

- 법령에 명시된 주요내용 외에 사업의 개요, 범위, 현황조사, 공사 중 보행안전 조치(법 제25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대상 사업계획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 개교 또는 개원 전에 교육감이나 구청장 권한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사전 신청할 수 있음 (아래 근거 및 절차 참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행환경 증진방안 검토 시 자문 대상

- 승인관청은 보행환경 증진방안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보행안전 및 교통안전 전문기관
 - 보행 및 교통 담당공무원
 -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
 - 법률 제23조의 통합설치협의회 의원 중 보행교통전문가
 - 시행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 위원

□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검토기준

- 주민들이 사용 중인 보행경로의 보존 여부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설치 여부
- 사업지내 보행자길의 적정 여부
 - 보행교통의 안전성과 편의성
 - 보행네트워크의 확충을 통한 보행연결성 제고
- 간선도로
 - 보도설치지침의 준수 여부
 - 자동차, 보행과 자전거통행분리와 상충처리
 - 보행자동선, 자전거의 동선을 고려한 교차로계획
 - 진, 출입구 접속부의 정온화시설 설치 등을 통한 보행자 우선처리
 - 보행자우선의 차도횡단시설 조성
- 이면도로
 - 차량속도감속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포장개선
 -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 대중교통과의 보행접근성 및 편의시설
 - 대중교통 환승지점의 보행연결성 및 시인성 개선 및 환승시설 편의제고
 - 보행자 편의를 위한 벤치 등 휴게시설 등 확보
- 보행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설치 여부
- 보행자 안내표지와 교통안전시설의 적정성 여부
- 공사 중 보행안전통로 설치계획 적합 여부

2.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가. 관련 근거

법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업무 개요

- (요약)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 및 조정을 위해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를 구간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목적) 관리주체별로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통합·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공간의 점유와 침해에 따른 보행자의 불편과 간섭을 최소화하고, 가로경관 및 유지관리 효율을 향상
-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공공시설물
 -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 그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
 - ※ 가드레일, 도로반사경, 영상정보처리기기,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체) 도로의 관리청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단위) 통합설치가 필요한 구간별로 구성 운영
- (구성 및 운영 시기)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등의 신설이나 정비 소요를 고려하여 구성
 - (예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전선지중화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도로굴착 및 구조변경사업, 보도설치 및 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지구 등

다.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운영 주체) 도로의 관리청
- (협의회 구성)은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 위원)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
 - 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3조)에 소속된 공무원
 -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관리기관의 직원
 -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 그 밖에 보행, 교통, 공공디자인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협의회 의장) 협의회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이 지명
- (결정 및 협조사항)
 -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협의회에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함
 -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그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이 정함

라. 협의 내용 및 기준

□ 통합 설치 기준

- 공공시설물등의 통합은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하며, 각 공공시설물의 기능과 통합 구조 및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해야 함
- 보도 내 일정 공간을 시설물 구역으로 지정하여 가로수, 전신주, 분전함 등 독립형 시설물을 통합설치함으로써 시설물 점유면적과 보행 지장을 최소화하고 보도의 유효폭 확보

- 가로등, 신호기, 안전표지 등 지주형 시설물을 통합함으로써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시설설치 및 관리비용을 절감

□ 시설별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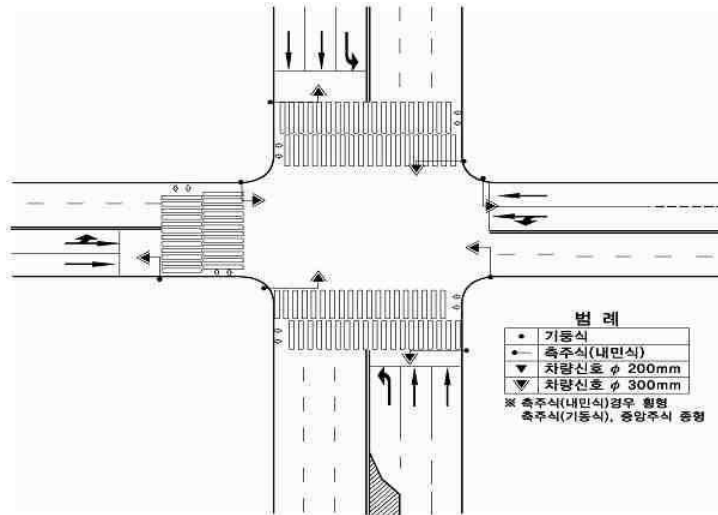
- 보행등 지주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시 유의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보행자 신호기에 연결하여 신호등화의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주는 보행자 신호기의 부가장치로서 정보통신부 고시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적 조건'에 규정된 358.5000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리모콘과 수동조작 버튼으로 작동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보행등지주에 통합 설치할 경우 리모콘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2방향의 보행등을 한 지주에 통합은 금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횡단보도로부터 1m 이내의 지점에 설치
- 교통신호등과 도로표지의 시인성에 유의
 - 신호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호등 주변에는 신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제표지와 지시표지 외의 시각정보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교차로에 설치되는 도로표지 3방향표지(403-2), 2방향표지(403-4, 403-6)등은 도로표지의 색상으로 인하여 신호등을 인지하는데 혼돈을 줄 수 있으므로 설치위치와 높이 조정 필요
- 교통신호기와 도로표지의 높이제한

☞ 교통신호기와 도로표지의 높이제한

구분	높이제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시설한계) 별표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0cm이상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제6조제1항관련)	450~500cm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500cm이상

-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상단이 4.7m미만인 구조물은 차높이제한(221) 안전표지를 설치하되 20cm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우측이나 구조물 전면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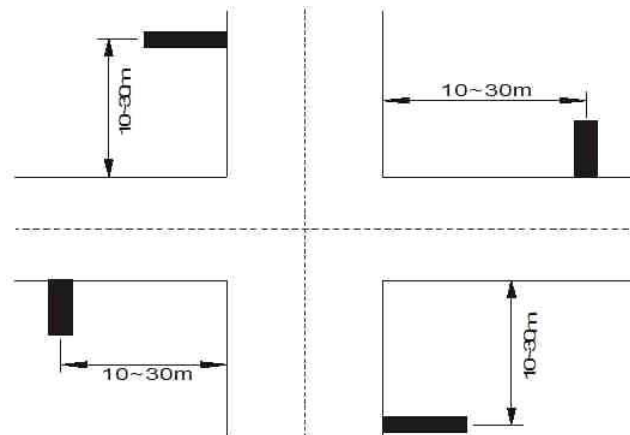
교차로의 교통신호등 위치



※도로표지규칙 [별표3]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등[제4조제2항관련]의 설치방법 및 장소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일면으로 설치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가. 관련 근거

법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업무 개요

- (요약)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기준 준수
- (설치대상)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가능
 -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 길에는 필수 설치(법 제24조 제1항 단서조항)
 - 보행자길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설치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 하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용 지지대를 설치(시행규칙 제 9조 제2항)
- 누구든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 하여서는 아니 됨
 - ※ 위반 시 법 제2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 림(법 제24조 제4항)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

□ 설치기준 및 절차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됨(「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보행안전법 제24조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사유에 해당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제4항에서 제7항까지)
- 화장실, 탈의실 등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내판 설치
- 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암호화기술 또는 상응조치,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방지기술, 보안프로그램, 보관시설, 잠금장치 물리적 조치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관보 등에 해당 방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삭제
-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 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

4.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가. 관련 근거

법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업무 개요

- (요약) 보행자길을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시 특별시장등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설치주체)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
- (설치시기) 보행자길 점용기간과 동일
- (적용대상)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제외한 보행자길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도로법 상 도로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적용)의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 공원구역 또는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다. 공사중 안전조치 시행절차

- (안전조치 절차) 보행자길의 유형에 따라 절차적 기준이 다름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도로점용허가 절차에 따름
 - 농어촌도로, 공원구역, 도시공원 내 보행자길 : 점용허가 또는 신고 시 보행교통처리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공사중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시정명령 가능
 - 그밖의 보행자길 : 점용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보행자길 점용 사유 발생 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자율 설치하고, 미설치 시 시정명령에 따라 보완

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2)

- 보행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하며,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최소 2.0미터 이상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보행안전통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투수성(透水性), 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마. 공사 중 안전관리 점검 및 시정

- 특별시장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공사중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이 적절히 확보되었는지 점검
 - 가능한 최단거리로 보행동선을 유지한다.
 -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한다.
 - 보행자용 공사안내표지는 특히, 야간공사시 시인성을 확보한다.
 -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보행자길의 굴착공사 시행시는 보행자를 위한 교통통제수를 고용한다.
 - 보행통로는 안전칸막이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장, 건설기계 및 통행차량으로부터 분리한다.
- 공사 중 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 점검 결과, 필요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바. 도로점용허가 시 안전관리기준과 비교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도로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 호)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5. 벌칙 및 과태료

□ 보행안전법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기준

법 제29조(벌칙)

-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30조(과태료)

-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 (벌칙) 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공사중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확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음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3)

☞ 보행자전용길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보행안전법)

위반행위	부과대상		근거 법조문	과태료
차마의 운전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1), 2)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제30조 제1항	5만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 5)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 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평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지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기구·장치 등은 제외한다. 나. 우마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3만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도로교통법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기준

-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차량 진입 및 통행 제한 위반 시 단속의 근거와 주체, 부과기준 등이 서로 다름
 - 보행자전용길은 「보행안전법」에 의해 특별시장등이 단속하며 과태료 부과
 -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경찰이 단속하며 범칙금 부과

☞ 보행자전용도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제3항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비교] 보행자전용길 통행위반 시	보행안전법 제16조제5항·제30조제1항	5만원			3만원

- 보행자우선도로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상의 규제와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음
 - (도로교통법 제8조 - 보행자 차도 통행 허용) 제1항의 보행자 통행방법을 위반시 보행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지만, 보차혼용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도로교통법 제28조의2 - 속도위반)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마의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위반 기준에 따라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하 보차혼용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유지 및 서행,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 제3호 도로 외의 곳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므로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범위와 부과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운전자)과 별표9(보행자)의 기준을 따름
 - ※ 해당 범칙행위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생한 경우 별표10에 따라 가중된 기준 적용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범칙금 부과기준

구분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승합자 동차등	승용자 동차등	이륜자 동차등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별표8 (운전자)	6. 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제3항 (제28조의2)	13만원	12만원	8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원	9만원	6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제1호·제2호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별표10 (보호구역)	6. 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제3항 (제28조의2)	16만원	15만원	10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13만원	12만원	8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10만원	9만원	6만원	-
		20km/h 이하		6만원	6만원	4만원	-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제1호·제2호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022 보행업무편람

발 행 일 : 2022년 6월 30일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 생활안전정책관실 안전개선과

044-205-4221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044-417-9886

